

정책자료집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

2013. 2.

국회의원 진성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포럼 “진실과 정의” /
한국진보연대

인사

국회의원 진성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 기간에 벌어진 국가정보원 직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등 불법선거운동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 급기야 민주주의 핵심요체인 선거제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정권 차원의 비호 속에서 국정원이 '국가'가 아닌 '정권'의 보위에 몰두한 결과,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국기문란 사건의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논란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야말로 국가정보원의 문제를 파헤쳐 바로잡는 첫걸음이자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는 일이다.

사실 국가정보원은 그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사항이 비밀에 부쳐져왔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지만, 특유의 비밀주의로 인해 오늘과 같은 사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국정원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 국회차원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나 불법선거운동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

또한, 차제에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 등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정보원법 등 법령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업무 규정으로 정치개입이나 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제2, 제3의 불법선거운동과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없다.

이 제안서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개혁방안이 담겨 있다. 때마침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의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 제안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목차

제1부 - 보고서 요약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	03
-------------------	----

제2부 - 현황

1. 불법 사찰 논란	09
2. 정보 수집 실패	22
3. 인권침해적 수사	24
4.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 실패	31
5. 통제받지 않는 감청	39

제3부 - 정책 제안

1. 통일해외정보원 전환	49
2. 권한 확대 반대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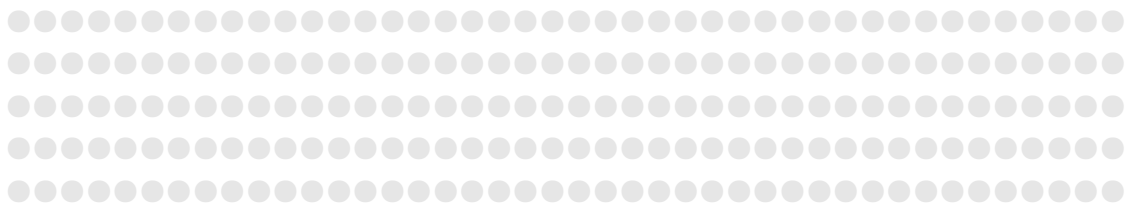
제4부 - 부록

부록1. [보론] 국가정보원 발전위 보고서를 통해 본 국가정보원 수사의 문제점 과 권고안	69
부록2.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77
부록3. 국회법 개정법률안	87
부록4. 독일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91

- ※ 본 연구는 국회의원 진성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 부록에 실려 있는 독일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의 번역에는 임규철(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은희(독일 Niederrhein Hochschule 석사), 홍선기(독일 Freiburg 대학 박사과정, 헌법 전공)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1부
보고서 요약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다음과 같이 그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1.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

-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을 계속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인권침해적 국가보안법 수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 개혁과제

◎ 수사권을 분리 및 이관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균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한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되었다.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통해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변정수 재판관 소수의견).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보안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공유가 책임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의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정보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정부 들어서 자연스럽게 부활되었다.
-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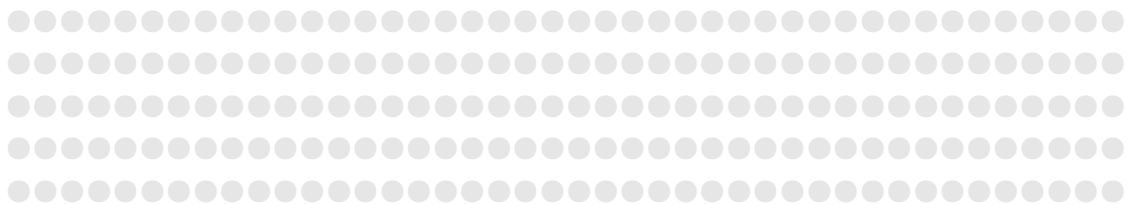
-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기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다.
- 그러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바,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다.



제2부 현황



1. 불법 사찰 논란

가. 개요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사건이 계속되어 왔다.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던 박정희 정권과 5공화국 시대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시절에도 불법도감청을 비롯한 민간사찰사건이 반복되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과 불법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법원 또는 검찰수사에 개입, KBS사장선임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활동가, 문화행사에 이르기까지 정부비관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활동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의혹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현황

1) 정치인 사찰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의 사찰에 나섰다 주장은 수차례 반복되었다. 특히 야당의원에게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의원에게 사찰이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은 것도 흥미롭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뤄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권력의 투쟁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 등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당의원보다 여당의원에게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의원에게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

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수중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 의원이 사찰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그 사찰을 중단시켰다, 자신들(민정수석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바가 없다고 변명을 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이러한 사찰은 지난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 게 총선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소위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의혹도 있다. 2010년 12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씨가 내사했다고 밝혔다.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정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의원, 친박계 이성현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한 사찰¹⁾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사유화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그는 2009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했다.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²⁾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인사가 흑금성의 북측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역 및 내용 전부 열람, IP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다.

1) 조선일보 2010년 11월 19일자 (與 고위층 “5급이 국정원장 사찰했다고 들어”)

2) 오마이뉴스 2010년 7월 22일자 (국정원, 참여정부 고위직 인사 무차별 도·감청): 오마이뉴스 2010년 7월 23일자 (간첩수사는 핑계, 실제로는 이해찬 표적사찰?)

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줘 이 사실이 알려졌다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로 알려졌다.

2) 법원 검찰에 압력행사

가) BBK 사건 개입

한겨레 기사³⁾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사항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 판사에게 적발되었다.

2008년 7월 3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군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해 진행사항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면 전화번호를 문자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7월 3일 재판에서도 재판시작 10여 분 후 법정에서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문자 머뭇거렸고 “기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나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가정보원 직원임이 드러났다. 이후 2009년 2월 6일 김군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 전직 대통령 수사 개입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⁴⁾에 따르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고위간부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을 보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뜻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부인했다.

3) 언론사 관여

3) 한겨레 2008년 7월 3일자 (국정원 BBK 재판 ‘사찰’ 파문)

4) 조선일보 2009년 5월 7일자 (국정원장, 검찰에 “노(盧) 불구속해 달라”); 오마이뉴스 2009년 5월 7일자 (국정원장이 왜 ‘노무현 불구속’ 종용했나?)

가) 언론 대책회의 참석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⁵⁾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인 김희선은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하였으며 10월 28일 민주당 전병헌, 이춘석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차장을 국가정보원법 3,11,19조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에 의하여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사과했다.

나) 탈북자 출신 기자 사찰

신동아와 오마이뉴스 기사⁶⁾에 따르면, 김정은 후계논의, 화폐개혁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 기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것이다. 최 기자는 96년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그녀는 망명 뒤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연합뉴스에 채용되었다.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했다. 최 기자는 ‘북한현지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후계논의, 화폐개혁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 기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5월초 북한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서로 발령 받는다.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취재부서였기에 사실상 최 기자는 취재부서로의 배치를 요구했다. 받아드려지지 않자 결국 2010년 5월 휴직계를 내고 휴직했다.

이후 2010년 7월 남편 현 씨가 국가정보원에 부부동반 여행을 위해 출국보고를 하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남성욱씨가 ‘어차피 최 기자가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으며 비슷한 시기 최 기자가 취재 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했으나 연합뉴스의 간부가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변동이 있을 듯한데 이것만 마무리 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5) 조선일보 2008년 10월 24일자 (국정원 2차장 방송정책모임 참석 논란);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28일자 (국정원장, 2차장 ‘언론 대책회의 참석’ 사과);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28일자 (민주당, 국정원 2차장 검찰에 고발)

6) 신동아 2010년 10월호자 ([심층취재] ‘새터민은 잠재적 간첩?’... 분노하는 탈북자 사회 : 하나원 근무자 줄줄이 실직, ‘김정은 후계’ 특종기자는 석연찮은 휴직); 오마이뉴스 2010년 10월 20일자 (국정원, ‘김정은 후계’ 특종기자 사찰했다)

정보기관의 보고보다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 먼저 북한의 주요정보가 보도되자, 청와대와 국회정보위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최 기자는 2011년 1월 31일 북한자료부장으로 복귀했으며, 2011년 2월 14일 한국기자대상 수상 후,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사망사건 직후 취재부서로 복귀했다.

4) 노동조합 사찰

가)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외압

경향신문 기사⁷⁾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에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양 후보는 200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고, 양천구청은 양성윤 위원장 후보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바 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중징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문자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양 후보는 “국정원,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중징계 요구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했다면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나) 기룡전자 노동조합 탄압

참세상과 레디앙 기사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기룡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사측은 결코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질 말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는 기룡전자 협상결렬 관련 기사⁹⁾에서 “기룡전자 노사갈등이 상급단체 힘겨루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 후 사측은 경영자총연맹과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안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7) 경향신문 2009년 10월 28일자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

8) 참세상 2008년 9월 11일자 (기룡분회, 기룡사태 ‘국정원 개입’ 의혹 제기); 레디앙 2008년 9월 11일자 (‘기룡 죽이기’ 국정원까지 나서나?)

9) 머니투데이 2008년 9월 8일자 ([기룡전자 협상 결렬] <상> 노사갈등, 상급단체 힘겨루기 확산)

다) 경북지역 노동조합 사찰

참세상 기사¹⁰⁾에 따르면, 금속노조 KEC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년 10월 7일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 동원,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 어용노조 설립 등 철저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KEC지회는 지난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노조를 사찰해 왔음을 드러내는 회사 측 문건을 폭로했다. 문건의 제목은 ‘직장폐쇄후 상황일지’로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날짜별로 노조 측 동향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문건에는 2010년 11월 10일과 11일 일지엔 “관리자 비상대기(4공장 점거 정보-국정원)”이라고 적혀 있다. 즉 사측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노조 측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5) 시민사회단체 탄압

가) 시민단체 후원 기업 압박

오마이뉴스 기사¹¹⁾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8년 9월 A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을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문의, 부담을 느낀 A공기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곳이 국가정보원이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B공기업에 대하여도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시민단체활동가 사찰 및 후원 기업 압박

경향신문 기사¹²⁾와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의 발언을 따르면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의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합의했으나, 2009년 1월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10) 참세상 2011년 10월 7일자 (노조파괴 국정원 개입 의혹)

11)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9일자 (“기업의 시민단체 기부내역 제출해 달라” 국정원, 현행법 어긋면서 ‘정보수집’ 논란)

12) 경향신문 2009년 6월 18일자 (박원순 “국정원, 불법 민간사찰”)

측에 연락하고 위 사업에 개입함으로써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박원순 상임이사의 2009년 9월 17일 기자회견문을 보면 친환경-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도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름다운가게에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 2009년 6월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문의하였으며, ▶ 2009년 5월 경기지역 모 시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는 등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개입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사실의 일체를 부인하였고 법적검토를 추진, 국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선일보 기사¹³⁾에 따르면 재판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2011년 12월 2일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박 시장의 폭로는 의도적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4월 6일 원심을 확정했다.

6) 문화행사 탄압

가) 불교계 행사 방해

한겨레 기사¹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7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했다.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권열 씨가 28일 오전 전화를 걸어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전화가 있는 뒤 결국 주지 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다. 또, 총무과장에 따르면 같은 날 14시경 주지스님이 불려 가보니 권 씨가 함께 있었다.

불허된 행사는 누리꾼 그룹 등이 지난 2009년 12월 6일 조계사에서 진행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하기 및 배달행사 ‘사랑을 담그다’에 이은 행사로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이름으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라면상자 1000개 를 이용해 10m 높이의 침성대 조형물을 쌓고 이 라

13) 조선일보 2011년 12월 3일자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 제기’ 박원순 시장 2심도 승소)

14) 한겨레 2010년 1월 30일자 (국정원 직원 “경내 집회, 종단에 누 될 것”)

면을 불우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였다. 행사 기간에는 ‘의료 민영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4대강 사업 추진 중단’, ‘〈한국방송〉(KBS) 수신료 거부’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었기에 주최 측은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에 대한 압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후 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가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조합원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청정승가를위해대중결사, 사단법인 보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국가정보원 직원 권모씨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나) 미술작품 전시 방해

한겨레 기사¹⁵⁾에 따르면 12월 3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한 직원이 광주시 문화예술 부서와 5.18 기념 문화관 대관부서에 전화를 걸어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 ‘삽질공화국’ 작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자, 광주시는 전화통화 후 운영조례를 검토,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주최 단체에 철거를 요구했다.

또한 광주민족미술인협의회도 “전시 개막 직전인 3일 오후 5시께 시의 5.18기념문화관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민협이 작품 철거를 하지 않자 시는 전시장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나 비판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기공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했던 4일 하루만 중단된 뒤 5일부터 다시 열렸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의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직권남용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다) 환경영화제 개최 방해

한겨레 기사¹⁶⁾에 따르면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년 환경영화제에 2억여 원씩을 지원해왔는데, 2009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보류되었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이미경 사무총장이 말한 바로는 2009년 5월 19일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서울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지원금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최 대표가 이만희 환경부 장관에게 전화했더니 ‘쉽게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유인촌 장관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다. 그래서 유 장관을 만났더니 ‘상황이 좋

15) 한겨레 2009년 12월 4일자 (국정원, 대통령 풍자 설치작품 철거 압력)

16) 한겨레 2009년 6월 24일자 (환경영화제 지원 중단 ‘이상한 이유’)

지 않다. 좀 기다려 달라'고만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5월 25일엔 직접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만났다.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기후변화리더십과정에 연사로 나온 오세훈 시장을 붙잡고 “환경영화제 지원에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오 시장이 ‘면목 없습니다. 잡아 놓은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국가정보원 압력설을 묻자 오 시장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이 총장은 밝혔다.

7) 기타 민간 개입 및 사찰

가) 4대강 사업 비판 교수모임 사찰

오마이뉴스 기사¹⁷⁾와 2008년 3월 30일 대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성명서를 보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모임에 대해 모임의 성격이나 정치 성향을 파악했다.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성향조사가 이루어졌고, 목원대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원대의 B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운하반대모임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한 성향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4대강 지역 주민 대책위 회유

위클리경향 보도¹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4대강 정비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정비를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라며 “그렇게 하면 밭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했다.

국무총리실 역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관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17) 오마이뉴스 2009년 3월 30일자 (국정원·경찰, 전국 ‘운하 반대 교수’ 성향 조사 “정치사찰, 공안 정국 악몽”... 총선 정국 강타할 듯)

18) 위클리경향 2009년 5월 21일자 ([포커스] 국정원, 4대강 정비사업 개입했다)

다) 민간기업 압박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를 둘러싸고 포스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종택 인선 ENT(주) 회장은 2009년 10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매일 일일 상황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기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라) 세종시 대책위 회유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 기사¹⁹⁾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은 임장철 연기군의원을 비롯한 면장, 농협조합장 등을 만나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했기 때문에 원안이 수정될 것”, “원하는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주겠다”면서 원안 수정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세종시 원안이 수정되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에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발언도 했다.

이후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접촉이 있는 것은 맞으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다.”며 군의원 등의 지역인사를 세종시 관련하여 접촉한 것을 시인했다.

마)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사찰

오마이뉴스 기사²⁰⁾에 따르면 5월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랑크 라 튀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됐다. 이후 한국일보에 의해²¹⁾ 이 차량이 국가정보원 소유부지의 공터(서울 서초, 구룡산 정상)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사찰의혹으로 번졌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에서 유엔특별보고관을 국가기관이 사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 튀 보고관은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 사찰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며 미행, 사찰 받았음을 폭로했다. 그는 5월 15일 연세대학교 강연에서도 “과테말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며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19) 오마이뉴스 2010년 1월2일자 (국정원 직원, ‘세종시’ 관련해 연기군 주민회유); 경향신문 2010년 1월 3일자 (국정원 직원이 세종시 백지화 회유)

20) 오마이뉴스 2010년 5월 17일자 (유엔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인권의식 실망이다”); 오마이뉴스 2010년 6월 8일자 (프랑크 라 튀 유엔특별보고관 “한국에서 국정원 감시 받았다”)

21) 한국일보 2010년 5월 17일자 (국정원, 유엔보고관 사찰했다 : 미행 차량의 소유주 주소지 국정원 부지로 확인)

바) 장자연 사건 개입

프레스이안과 미디어오늘 기사²²⁾에 따르면 MBC 이상호 기자는 MBC의 모바일 전용TV ‘손바닥TV’에서 장자연 자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 경찰서의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장자연 씨의 매니저 유장호 씨와의 연락을 장자연 씨가 자살한 날부터 취했으며, 경찰은 유장호 씨를 수사하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개입의혹을 알았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상호 기자의 폭로 다음날 국가정보원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8) 기타 불법행위

가) 국정감사 개입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스이안 기사²³⁾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피감기관을 사찰해왔다. 피감기관 상황팀으로 하여금 수감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국가정보원 조정관과 경찰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수감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주요 사안, 특이사항과 질의 답변 내용, 감사장 주변의 집회·시위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SBS 보도²⁴⁾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나) 종교대책회의 개입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²⁵⁾ 당시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2차관이 2008년 8월 26일에 주최한 ‘종교차별 시정대책’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국가정보원 국장급 관계자가 동석했다. 신재민 차관은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참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볼 때 종교차별시정의 관계기관으로 볼 수 없고 직무범위를 위반한 것이다.

22) 프레스이안 2012년 1월 5일자 (장자연 매니저, 장자연 자살 당일부터 국정원 직원 만났다); 미디어오늘 2012년 1월 6일자 (국정원, 장자연 사건 개입 의혹에 “사실무근 법적대응”)

23)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17일자 (국감 끝나면 국정원·경찰청 정보 보고);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20일자 (부산노동청 국감, 국정원 서울본부 직원에 보고); 한겨레 2008년 10월 20일자 (‘국정원에 국감보고’ 노동부 난타); 프레스이안 2008년 10월 20일자 (이영희 노동장관 “국정원 보고’ 통상적...직원 실수”)

24) SBS 2008년 10월 20일자 (민주노동당, 김성호 국정원장 ‘직권남용’ 고발)

25)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24일자 (정세균 “한나라당 피 못 속여, 관계기관대책회의 부활”)

다) 인사청문회 정보제공자 색출

프레시안, 경향신문 기사²⁶⁾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2009년 7월 20일 출연한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박 의원이 천성관 검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후보자의 부부동반 해외 골프여행 출입국 기록, 후보자 부인의 명품 구매목록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이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였다.

라) 불교계 인사 압력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기사²⁷⁾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2011년 3월 6일 '마지막 법문'에서 자신의 봉은사 퇴출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명진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2월2일 봉은사를 방문해 1월22일 리영희 선생님 49재 때 제가 했던 법회 내용에 대해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지인 진화 스님이 압박을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라고 발언했다. 이에 신도들이 “받았어요.”라고 답하자 명진 스님은 “봉은사 문제는 권력과 밀접하게 결합된 문제다. 지승 총무원장, 이명박 장로, 이상득 의원의 총체적인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2010년 3월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조계종 지승 총무원장을 찾은 자리에서 ‘강남에 좌파 스님을 그냥 두면 되겠느냐’고 했다.”며 “봉은사를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봉은사를 정권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여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명진 스님은 주지 임기 만료를 5일 앞둔 2010년 11월 9일 주지직에서 내려와 문경 봉암사로 떠나 수도 중이었으며, 2011년 3월 1일 봉은사 주지인 진화 스님으로부터 “봉은사를 떠나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다. 평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탄압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은 이

26) 프레시안 2009년 7월 17일자 (박지원 “국정원과 검찰이 내 주변 조사”); 경향신문 2009년 7월 17일자 (천성관 자료 출처·제보자 검찰·국정원서 조사 착수)

27) 조선일보 2011년 3월 6일자 (명진스님, “봉은사 떠나는데 국정원 개입 있다”);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6일자 (명진스님 ‘봉은사 퇴출’에 국정원장도 개입?)

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데는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법원,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개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 부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기획조정권한을 핑계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출입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과 국가기관의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수집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기능이 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2. 정보 수집 실패

가. 개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주요 정보 수집에 실패하거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이어져 왔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실패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이 실패한 사건과, 김정일 사망 시기에 대한 정보획득을 실패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나. 현황

1)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실패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2011년 3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조선일보 보도²⁸⁾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익(國益)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협상 전략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며 “직원들이 발각된 것은 뜻하지 않은 실수”라고 했다. 남자 2명, 여자 1명의 국가정보원 팀은 16일 오전 9시27분쯤 롯데호텔 19층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만지다 인도네시아 직원과 맞닥뜨리자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취를 감췄다. 당시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부총리급) 등 장관급 6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50여명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직후였다.

2) 김정일 사망 시기 정보획득실패

28) 조선일보 2011년 2월 21일자 (印尼특사단 숙소 잠입자는 국정원 직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011년 12월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몰랐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원 원장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며 “어제(19일) 훈련에 나간 각군 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후 51시간 가량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했으며 외통·국방·정보위에서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당장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면 정보 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정몽준 전 대표는 “우리의 정보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다. 무력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도 “정보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수준이다. 삼성은 발표 전날 알았다고 한다.”며 개탄했다.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능력이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는 상당수준에 올랐다는 평가지만 인적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수집은 부재하다는 평가다.

다. 평가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실패의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는 대북파트의 소외로 붕괴했다는 주장이 있다. 현 정부 출범 전후 소위 대북휴민트가 와해되었고 그 이유는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²⁹⁾. 어느 쪽이 사실이던 간에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했고, 그 이유는 인사농단에 있는 것 같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인사가 정보의 전문성이 없는 측근 인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³⁰⁾. 정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이유의 인사 관여가 정보 능력을 저하시킨 측면이 있는 것이다.

29) 한겨레 2011년 12월 21일자 ([사설] 고장난 ‘원세훈 체제’ 언제까지 내버려둘 텐가); 경향신문 2011년 12월 28일자 ([오늘]원세훈과 미스터 빈)

30) 한겨레 2011년 4월 11일자 ([아침 햇발] 프로 국정원?)

3. 인권침해적 수사

가. 개요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수사권의 남용이 국민과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압수수색과 감청, 대대적인 수사에 의한 인권 유린이 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나. 현황

1) 소위 왕재산 사건

2011년 7월 4일 국가정보원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이른바 왕재산 조직의 총책 김00씨를 체포하고 김00씨를 포함 조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조직원 혐의로 김00씨 등 5명이 구속되었고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12월 불구속수사 중인 1인을 추가 구속하였다. 소위 왕재산 조직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족21> 안00 편집주간, 아버지인 안00박사 자택 압수수색(2011년 7월 6일)과 정00 편집국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2011년 7월 24일)이 이어졌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미친등록금의나라 발간) 압수수색(2011년 7월 9일) 등이 이루어졌다. 구속, 체포된 5명에 대한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면회권, 동행권이 침해된 정황이 있으며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 수사에 대한 불출석 소견서를 제출하고 묵비권 등을 행사하였으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강제로 인치하여 반말과 욕설로 위협하고(강압수사), 신문조사가 없는 날에도 조사실에 인치, 묵비권 행사철회를 강요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피의자들의 단식 항의를 두고 단식중단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도 하였다.

8월 12일 한상대 검찰 총장이 취임하며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언급하였고 이어 8월 25

일 검찰은 구속 피의자 5인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특수잠입, 탈출 등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왕재산 조직이 인천지역의 폭력혁명의 거점으로 2014년에 군부대 등을 폭파한 계획을 지냈으며, 이들이 소위 '야권연대'에 대한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다고 발표하였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의 무분별한 혐의사실 공표로 인해 소위 왕재산 조직사건 피의자들은 중복좌익세력, 국가변란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검찰 기소가 이뤄지고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국가정보원은 왕재산 조직과 유관 혐의 130여 명에게 참고인 소환을 요청하여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켰으며 출석을 강요하는 언동 등으로 참고인 소환을 요청 받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 왕재산 조직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2012년 2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대해 왕재산 관련 언급을 하며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가정보원이 인천 평통사의 사무국장과 교육부장이 이른바 왕재산 인천 지역책에 포섭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평통사 측은, 두 단체가 인천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공통점 외에 아무 연루가 없다며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를 국가정보원이 부당하게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음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2012년 2월 23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통해 소위 왕재산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2년 6월 현재까지 소위 왕재산 조직과 유관되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받았던 단체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 통일운동 단체 수사

가) 한국진보연대 사건

2010년 6월 29일 국가정보원은 한0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인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3인을 체포하였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이미 범민련, 실천연대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던 통일운동단체를 이적 단체화하여 그 성원들을 수사, 구속한 바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들 단체에 이어 한국진보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은 천안함 사건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진보연대 성원 10명에 대해 사전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이 7인에 대해 기각한 바 있고 체포된 3인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2인이 석방되어 한00 공동대표만 구속된 채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특수잠입탈출, 찬양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국가정보원의 최초 수사 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사라졌으며 심지어 한00대표 포함 3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특수잠입탈출 무죄, 회합통신 무죄로 3인 모두 집행유예 선고되었고 2심에서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민련 사건

2009년 5월 7일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와 지역연합의 전, 현직 간부와 활동가, 지방통일운동단체 실무책임자 등 16명의 집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해 6.15경기본부, 6.15충북본부 사무실 등 9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이00의장을 포함 6인이 체포, 구속되었다. 검찰은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 방북 남북교류협력 사업과정의 일부분을 특수잠입탈출로 기소하였다.

범민련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패킷 감청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감청(통신제한조치)이 14차례에 걸쳐 연장되는 등, 과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가 2009년 11월 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을 결정하여 일시적으로 재판이 정지되는 한편,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2012년 재판이 속개되어 주요한 혐의사실이었던 특수잠입탈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회합통신, 찬양고무 위반 등은 유죄가 선고되었다.

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2008년 8월 27일 국가정보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제주 등 지역 실천연대 사무실과 주요 일꾼들의 자택 등 2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전현직 실천연대 간부 6인 체포하였고 이중 4인이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 방북 남북교류협력 사업과정의 일부분을 특수잠입탈출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1심, 2심(2009년)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되었으며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판결되었다.

3) 전교조 사건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인 1월 18일 박00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의 자택과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최초 혐의로는 전교조가 2003년 이후 진행해 온 남북 교육자 교육협력사업 과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것의 위법성이라고 언급되기는 했으나 뚜렷한 혐의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 교사에게는 48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조사나 기소 없이 4월 언론을 통해 ‘북한 찬양’ 급훈을 압수했다는 기사를 유포하였다. 문제의 급훈은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였다. 그러나 급훈을 걸었다는 교사는 이 급훈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말인지 몰랐다고 했으며 이에 대한 추

가조사 혹은 기소는 현재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 구성원에 대한 사건은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전후한 시점인 2007년, 전북 관촌중 김○○ 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 2월 1심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건

2012년 2월 8일 평통사 사무실, 자택, 홈페이지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9월 20일 대구, 부천, 군산지역의 평통사 사무실과 활동가 자택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2월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등 평통사의 주장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통일부와 협의해서 보낸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팩스를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이적성 여부가 거론되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왕재산 하부조직 등이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11월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고 있다. 평통사는 “지난 2월 압수수색 이후 또다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제동을 걸고, 대선 국면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하였다.

5) 청학연대 사건

2011년 5월 4일 국가정보원은 6.15청학연대 활동 건으로 서울(7명), 대전(1명), 광주(1명), 제주(5명) 등 총 14명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이 중 4명을 체포하였으나 영장이 기각, 석방되었으며 2012년 8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6) 탈북자 간첩 사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성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했다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되어 구속된 사례 등 탈북자 간첩 사건이 계속 이어졌다. 2008년 원00사건, 2010년 김00사건에 이어 2012년 이00이 5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00는 군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00는 서울메트로 전 간부 오모 씨에게 접근해 서울메트로 대외비 문건들을 빼낸 혐의로 구속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전향해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 기타 사건

그밖에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 2009.10.22. 간첩활동 혐의로 a대학 강사 이00씨 체포, 구속.
- 2009. 한총련 전 간부 출신 김00씨를 지난 정부시기 방북 건으로 긴급체포. 당시 임신 중. 2012년 1심 재판 간첩 혐의 무죄, 집행유예.
- 2010.6.9.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6.15부산본부 사무실과 장00 전 집행위원장, 도00 사무처장 자택 압수수색.
- 2011.11.23. 금속노조 간부 2명의 자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남부지구협 사무실 압수수색.
- 2012.2.9 자주민보 이00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 체포.

다. 평가

1) 대대적인 수사, 그러나 주요 혐의 무죄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수사 사건의 특징은, 대대적인 수사, 광범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떠들썩한 언론 보도로 중복 논란이 확대 생산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이고, 더불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회자된 왕재산 조직사건은 재판 결과 왕재산이라는 반국가단체 혐의 자체가 무죄로 선고되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의 경우도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십여 명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범민련 성원에 대한 사건에서도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학생 여간첩으로 언론 상에 오르내렸던 김00씨 사건의 경우 간첩 혐의에 무죄 선고되었다. 전교조 사건의 경우는 주요사건 대부분이 무죄 사건이고(김00교사 사건, 최00교사 사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도 있지만, 언론 상에서 중복 세력으로 매도되고 국가정보원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증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 공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선거개입, 정치개입 : 중복 논란 지피기, 색깔론 악용

국가정보원 사건들의 대부분은 선거 시기(2011년과 2012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시기(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대부분 사건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여론재판에 의해 피해자들은 간첩으로, 중복세력으로 매도되었다. 수사기관의 횡포로 피의자들의 인권과 변론권은 침해당하였다. 왕재산

조작사건은 2012년 11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간첩조직’이 북한이 사주한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해 암약했다는 근거도 없는 검찰 발 기사가 걸핏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선거시점 야권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북한의 사주라는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공안기관의 선거 개입이다.

3) 정권 비판적, 체제 비판적 시민사회단체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이명박 정부 시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어온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한국 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합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에 대해 이적 혐의를 씌우고 간첩 혐의 등으로 탄압하였다. 전교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 대한 정치탄압에 이어 민족21, 자주민보 등 정권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도 이뤄졌다.

4) 수사권 남용, 인권유린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압수수색, 대대적인 수사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범민련 사건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감청이 논란이 되었고 왕재산 사건의 경우 그 대상이 130여 명에 이르는 무차별적인 소환장 남발이 이뤄졌으나 국가정보원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합법적인 수사절차라고 강변해 왔다. 압수수색을 48시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국가정보원 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방해받기도 하였다. 수사권이 남용되고 그 과정에 인권이 유린되어도 국가정보원은 비밀기관이라는 점 등으로 그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5) 탈북자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08년, 2010년, 2012년에 연이어 국가정보원에 의해 발견된 탈북자 간첩 사례가 두드러진 동시에, 국가정보원 주도로 이뤄지는 합동심문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 등 반인권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탈북자 강OO씨는 합동신문 과정에 반인권 처우가 있었다는 폭로를 하기도 하였는데 강씨에 의하면 두 세 평 남짓한 공간에 사실상 갇힌 그는 탈북 배경과 경로는 물론 북한 내 친인척 관계, 학력과 이력 등 자신의 거의 모든 ‘과거’를 고백해야 했고, 폭행과 폭언이 동반되었다고 한다. 강씨를 포함한 여러 탈북자들의 이러한 증언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바 있다. 2011년에는 탈북자 수사 과정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피해자가 위장 탈북 후 심적 부담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런 사실을 2주 이상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렸다. 부검결과가 밝혀지기도 전에 화장되었다는 의문도 제기되었으나, 국가정보원은 주검이 현재 국내 한 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주검을 넘겨받은 경찰은 단순 변사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관련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탈북자들은 보호받을 방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 탈북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이뤄지면서 그 비밀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가 차단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4.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 실패

가. 개요

앞에서 본 것처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국가보안법 수사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기제는 일반적으로 최고정책결정자(대통령), 언론과 시민단체, 사법부 그리고 국회로 구분할 수 있다. 최고정책결정자는 인사권과 조직개편권, 행정명령(대통령령)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정보활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밀권력의 남용을 폭로하거나 국민 여론을 조성할 수 있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어렵다. 사법부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거나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민사구제를 통해 배상 받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이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사후적 통제 성격을 가진다는 점, 법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사안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원이 정보기관의 비밀성을 우선하기 쉽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근거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법률적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국가정보원 정보활동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토대가 된다. 특히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상임위로 정보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로 변경되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법안 처리 등 입법권의 행사 △국가정보원의 예·결산 심의 및 승인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한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국정감사와 현안보고를 통한 자료 확보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정리하고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정리해 본다.

나. 현황

1) 법률안 처리

가) 가결 건수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정보원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는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 소관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는 의원발의 13건, 위원회대안 2건, 정부안 4건 등 총 1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의원발의 1건, 위원회대안 2건, 정부안 2건 등 총 5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대안폐기되었거나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보면, 정보위원회에 접수된 법안 자체도 적고 처리된 법안의 수도 적음을 알 수 있다(〈표 II-1〉 참조). 이는 정보위원회가 겸임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상임위나 여성위 등 다른 겸임위원회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나) 가결된 법안의 내용

법안의 가결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가결된 법안의 내용이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2011년 10월 통과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위원회대안)의 경우 타법(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비 수준의 법안이었으며, 같은 달 통과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정부안)의 경우 법률 한글화의 일환이었다. 같은 달 통과된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안(박지원안)의 경우 1997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실질적인 대학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2009년 1월 통과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위원회대안)의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2009년 4월 통과된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개정안(정부안)도 법률 한글화의 일환이었다. 이처럼 18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표 II-1〉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처리 내역 (단위: 건수, %) ³¹⁾

시기 상임위원회	16대 국회 (2000~2004)		17대 국회 (2004~2008)		18대 국회 (2008~2012)	
	처리	가결(%)	처리	가결(%)	처리	가결(%)
국회운영	57	12(21)	268	24(8.95)	296	25(8.45)
법제사법	219	82(37.4)	623	148(23.7)	987	218(22.1)
정무	104	36(34.6)	294	83(28.2)	899	137(15.2)
재정경제 (기획재정)	342	130(38)	892	202(22.6)	1332	188(14.1)
통일의교통상 (외교통상통일)	27	5(18.5)	113	20(17.6)	178	43(24.2)
행정자치 (행정안전)	330	88(26.6)	1022	184(18.0)	1650	221(13.4)
국방	61	31(50.8)	205	55(26.8)	284	63(22.2)
교육 (교육과학기술)	121	44(36.3)	402	107(26.6)	859	134(15.6)
과학기술 정보통신	100	53(53)	235	77(32.7)	773 (문화체육 관광방송통 신)	120(15.5)
문화관광	107	37(34.5)	417	85(20.3)		
농림해양수산 (농림수산식품)	153	88(57.5)	479	183(38.2)	755	208(27.5)
산업자원 (지식경제)	142	90(63.8)	464	193(41.5)	774	244(31.5)
환경노동	209	64(30.6)	511	182(35.6)	859	138(16.1)
보건복지 (보건복지가족)	246	78(31.7)	675	136(20.1)	117	33(28.2)
건설교통 (국토해양)	196	82(41.8)	750	206(27.4)	1530	270(17.6)
정보	7	1(14.2)	19	1(5.26)	19	5(26.3)
여성 (여성가족)	10	5(50)	79	10(12.6)	248	38(15.3)
계	2431	925(38.3)	7448	1897(25.4)	11560	2085(18.0)

31)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의 통계는 김정도, “국가정보원 통계를 둘러싼 국회-행정부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6집 3호, 2009.2, 8쪽에서 인용. 18대 국회의 통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검색일 2012.4.20)의 의안통계에서 발췌.

2) 예결산 통제

국가정보원 관련 예산은 ① 공식적인 본예산 외에 ② 기획재정부 예비비³²⁾에 숨겨져 있는 부분, ③ 비밀활동비³³⁾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본예산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정부지출 중에서 가장 투명성이 미흡한 항목으로 그 사용용도 및 내역을 추적해 내기가 힘들다.

국가정보원 본예산의 경우에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고,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2항).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의 사용신청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

〈표 II-2〉 국가정보원 본 예산상 각종 특례 규정³⁴⁾

	일반 국가기관	국가정보원(본예산)
예산안 제출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예산요구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총액 제출 ·예산안과 관련된 첨부서류 제출 면제
예산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정보위원회 심사 ·예결위 심사 생략 (정보위원회 심사를 예결위 심사로 간주)
회계검사	·감사원의 회계 감사	·국가정보원장이 회계감사

결국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단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가 유일한 검증장치이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32)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예산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예비비 2조 1,000억 원 중 3,340억 원이 '국가안전보장활동비'로 지출되었다.

33)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4) 김정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통제",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12, 58쪽.

으며, 국가정보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비공개로 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에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5항).

결국,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예결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항상 무수정 통과되는 등 국회를 통한 국가정보원의 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의 경우, 2006년도 예산 심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예산 원안에서 215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정보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국내정보 업무분야 예산에서 150억 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정치사찰 비판을 받아온 국내정보 활동비가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국내 활동을 축소하려는 국회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³⁵⁾.

그러나 18대 국회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매년 거의 원안의결되고 있다. 이는 이전 국회에서 2002년 80억 원, 2003년 100억 원³⁶⁾, 2006년 215억 원을 삭감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결산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내역이 그대로 통과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결산 통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회계검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책임 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가정보원법 제14조)는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를 전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내부 통제에 맡기고 있다.

3)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직접 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부에 대한 국회의 중요한 통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정보위원회는 1994년 출범 당시부터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17대 국회의 2006년도 국정감사까지 국정감사의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7년도 이후와 18대 국회의 경우, 현황이 알려져 있지 않다³⁷⁾.

35) 경향신문 2005년 11월 29일자 (국정원 내년예산 215억 대폭 삭감)

36) 예산의 항목별 삭감 내용은 △감청장비 구입 및 운영비 20억원 △사업비 증가분 33억원(전액 삭감) △대북정보비 20억원 △과학기술 정보비 24억원 △정보협력 및 지휘 활동비(국가정보원장 관공비) 3억원이었다.

〈표 II-3〉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현황³⁸⁾

구 분	위원수	요 구 위원수	감사개시전		감 사 개시중	계	위 원 1 인 당 요구건수	
			위 원 회 선정기관	본 회 의 승인기관				
14대 국 회	1994년도	12	4	53		53	4.4	
	1995년도	12	5	79		79	6.6	
15대 국 회	1996년도	12	8	66		66	5.5	
	1997년도	12	7	62		62	5.2	
	1998년도	12	9	84		84	7	
	1999년도	11	6	45		45	4	
16대 국 회	2000년도	12	7	130	22	152	12.7	
	2001년도	12	7	106	87	193	16	
	2002년도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미 실시						
	2003년도	12	11	152	106	258	21.5	
17대 국 회	2004년도	12	10	483	264	747	62.3	
	2005년도	12	12	687		687	57.3	
	2006년도	12	10	707	309	1,016	101.6	

국정감사의 개최일수를 보면, 정보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짧게는 2일, 길게는 5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정보원의 자료제공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기관에 대한 활동을 파악하기에는 2~5일의 기간은 너무 짧다.

4) 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의 보고는 대부분 대북관련 사안이었다. 17대 국회에서는 대북 관련 사항과 더불어 핵문제, 테러문제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8대 국회부터는 보고사항만 공개하고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어떤 보고를 하는지는 정보위원이 기억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단편적인 내용 이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역대 정보위원회 보고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³⁹⁾.

37)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7년까지 국정감사 참고자료집을 제작, 공개해왔으나 2008년 이후에는 제작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38)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07년도 국정감사 참고자료”, 2007. 10, 28쪽.

39) 김윤미, “한국 국회의 국가정보기관 통제”,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국가정보학전공 석사학

〈표 II-4〉 역대 정보위원회 보고현황

	현황보고	현안보고	계
14대	2	6	8
15대	2	15(1)	17(1)
16대	2	14	16
17대	2	22	24
18대	1	7	8

()는 중복된 숫자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3조 3항)는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준을 국가정보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자료공개 거부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5) 인사청문회

2003년 2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모두발언과 청문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 18대 국회에서는 2009년 2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원세훈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과 병역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청문보고서에 ‘적합’, ‘부적합’ 등 정보위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여야의 견해만 각각 명기하기로 했는데, 청문회 이후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야당측 의견이 전달되기도 전에 최병국 당시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결재해서 의사국으로 넘기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문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청와대로 전달되었다. 이는 이날 오후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재촉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⁴⁰⁾.

6) 공청회

위논문, 2010. 4, 45쪽.

40) 프레스리안, 원세훈 “누나가 착각했다”...부동산 의혹 해명이 의혹 부풀려, 2009.2.1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212153727

초창기 정보위원회는 국회법 제54조 2항에서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4조 4항에서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정보위 이름으로 공개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는 단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2009년 11월 열린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그것이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2005년 9월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1차 공청회’ △2005년 11월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2차 공청회’ △2005년 12월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2007년 4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등 4차례의 공청회가 열린 것에 비하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7) 회의의 비공개 등 운영의 문제

공청회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보위원회 위원 정원은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국회법에 의해 12명으로 고정되어 있고(국회법 제38조), 위원의 선임·개선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으로 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선임·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제48조 3항)

다. 평가

현재 국회를 통한 국가정보원 통제는 매우 미흡하다. 우선,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며, 충분한 보좌를 받고 있지 못하다. 국회가 국가정보원을 감시·통제하는 데 충분한 제도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통제받지 않는 감청

가. 개요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통신의 자유라고도 한다.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감청은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비밀보호법」 또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때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 제1조).

그러나 감청 집행의 압도적 다수를 일반범죄 수사와 관련기관이 아닌, 국가보안법 수사와 국가정보원이 차지하는 실태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비밀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왔다.

나. 현황

1) 국가정보원의 감청 현황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동법에 의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3조의 제2항).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표현행위는 일반적인 언론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익명성의 보장과 접속에 있어서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⁴¹⁾.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감청을 집행해 왔으며, 그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표 II-5〉 통신제한조치 통계

* 단위 : 전화번호/아이디건수

년 \ 기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합계	국가정보원비율
2005	100	241	8,082	112	8,535	94.7%
2006	43	131	8,440	51	8,665	97.4%
2007	41	95	8,628	39	8,803	98.0%
2008	24	94	8,867	19	9,004	98.5%
2009	9	163	9,278	47	9,497	97.7%
2010	4	227	8,391	48	8,670	96.8%
2011	3	263	6,840	61	7,167	95.4%

* 출처: (구)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구성

국가정보원의 감청은 전체 감청 건수 중 94~99%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5〉는 (구)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반기별로 공개한 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감청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 집행의 많은 부분이 비밀에 쌓여 있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감청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정보기관이 불법 감청을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 II-6〉은 직접 감청과 간접 감청을 구분하지 않고 법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고 또 법원이 이를 허가한 건수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2008년 이후 통신제한조치 허가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6〉 국가정보원 통신제한조치 허가 건수

연도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2006년	137	135	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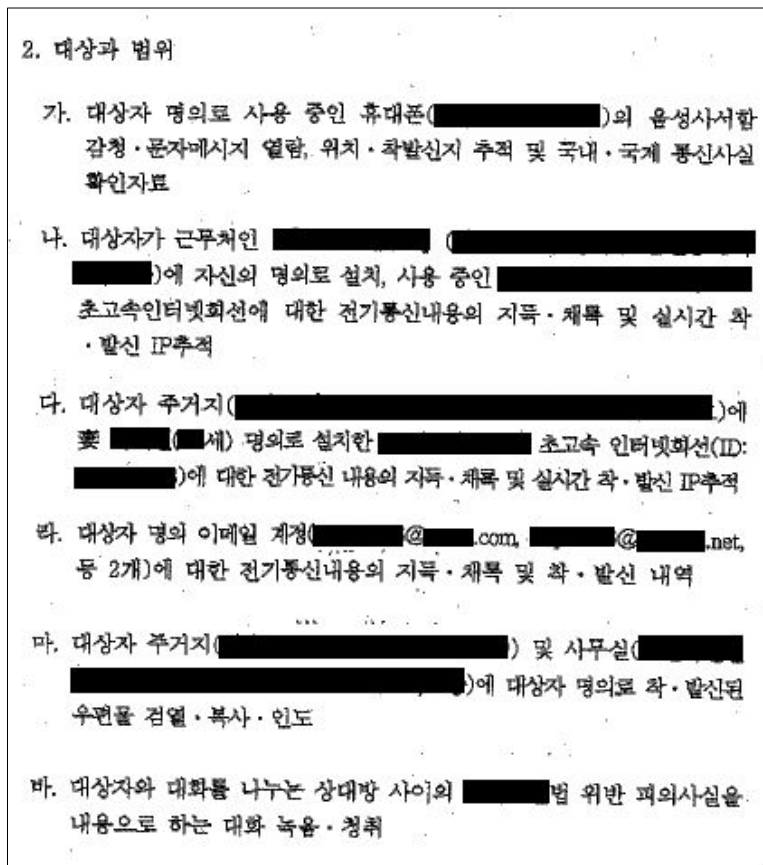
41) 오동석. 200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국회 문병호 의원 등 주최(2007. 6. 5).

2007년	150	144	4	2
2008년	260	252	7	1
2009년	369	341	21	7
2010년 1월 ~ 6월	100	91	4	5

* 출처: 2010년 국회 국정감사 법원행정처 자료(박영선 의원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허가서 한 장으로 휴대폰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부터 인터넷 메일은 물론 대화에 이르기까지 저인망식으로 한 번에 모두 실시되어 온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II-1〉 국가정보원의 감청 허가서 (일부)



특히 2009년에는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수사 과정에서 1990년대 말 경부터 인터넷 회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패킷 감청(DPI : Deep Packet Inspection)을 집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그림 II-1〉의 ‘나’항과 ‘다’항)⁴². 피의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을 허가한 패킷 감청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여 대상자와 대상 통신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그 기본권 제한 정도가 매우 크다. 패킷 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 이메일과 메시지의 발송 및 수신 내역과 그 내용 등 통신내용 일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패킷감청 장비가 31대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구입한 장비가 그중 23대에 달한다고 한다⁴³⁾.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이다⁴⁴⁾. 국가정보원은 이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에서 지메일 등 외국계 이메일을 감청하고 있으며 이를 감청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변하였다⁴⁵⁾.

한편, 국가정보원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감청을 집행해 왔다는 사실도 문제로 불거졌다. 통상 감청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연장은 2월에 한하여 이루어진다고 해석되어 왔다(법 제6조의 제7항). 그러나 201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활동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가 2월씩 14차례에 걸쳐 연장되었고, 그동안 대상자에게는 어떠한 수사 통보나 감청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조항이 국가정보원의 저인망식 감시와 정치 사찰에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해당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 위헌 결정을 받았다⁴⁶⁾.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심히 크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설시하였다.

2) 감청의 민주적 통제 부족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기관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다. 먼저 정보기관이 외

42)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패킷 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2009년 8월 31일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패킷 감청 문제가 시민사회에 처음 알려졌다.

43) 국민일보 2009년 11월 16일자 (인터넷 사용 내용 실시간 수집 가능... 국정원 '패킷 감청' 설비 확충 안팎)

44) 헌법재판소 2011헌마165,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 등(심리중).

45) 한겨레 2011년 9월 16일자 (구글 지메일도 국정원이 감청)

46) 헌재 2010.12.28, 2009헌가30.

국인을 감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7조 제1항).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다(법 제8조 제1항). 이러한 규정들은 영장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통신 감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 정부 주도로 의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직접감청을 제한하면서도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18대 국회에 들어선 2008년 10월 30일, 이한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1650)은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을 집행할 경우 집행기관이 통신기관등에 감청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간접 감청’ 의무조항을 두었으나(안 제9조 제1항 제1호),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인 통신 이용자에 대하여 감청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완화하여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을 허용하였다(안 제9조 제1항 제2호)⁴⁷⁾. 문제는 국가정보원의 외국인 감청이 법원의 영장을 요하지 않고 그 실행에 대하여 국회는 물론 어느 누구도 사전 혹은 사후에 감독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정보원 외부에서 감청을 감독하는 제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영장 심사 과정을 통해 통신 감청의 실행을 감독해야 할 법원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허가서 한 장으로 우편물 검열과, 유선전화·휴대전화·인터넷 메일에 대한 감청은 물론 인터넷 회선 전체와 대화에 대한 감청까지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저인망식 감청을 허용해 왔다.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그 관행이 중지되기까지 무기한 감청도 제지하지 못해 왔다.

감청의 집행 재량 또한 정보기관에 부여되어 있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법 제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지적해 왔듯이⁴⁸⁾ 정보수사기관과 통신기관 간의 권력적 위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신기관이 불법

47) 한겨레 2009년 3월 4일자 (‘국정원 감청’ 오·남용 길 터준 ‘통비법 개정안’)

48) 2000년 5월 12일 감사원은 “통신제한조치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도감청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협조 문제를 지적하였다. 전화국 담당자들이 법원의 감청 영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감청 요청에 응했는가 하면 협조대장에 감청내역조차 기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감청이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데에도 통신사업자들은 이에 동조하였다. 2003년 8월에는 검찰과 경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신업체 가입자들

감청 감독 및 견제 권한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국회 역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감독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는 달리, 독일 G-10 위원회, 영국 통신감청 커미셔너, 프랑스 국가보안감청감독위원회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외국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청을 감독하는 기구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캐나다 통신보안국(CSE), 영국 국가통신본부(GCHQ), 호주 방위통신대(DSD), 뉴질랜드 국가통신보안국(GCSB) 등 신호 정보기관을 일반 정보기관과 따로 두어 정보기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감청 집행 현장에서의 감독이 매우 시급하다. 발부된 감청 허가서의 취지대로 실제 감청이 집행되는지, 왜곡이나 오염 없이 감청 내용이 기록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감청 대상자의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감청 기록을 열람하여公所 사실 등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들의 방어권 행사를 매우 어렵게 한다. 이에 비해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감청 입회 및 기록 제도를 참고할 만 하다. 대만의 경우 감청 집행기관은 통신감청 후 매월 영장 발부인(법원)에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법원은 직원을 감청 집행장소에 파견, 집행상황을 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는 밀봉 또는 기타 표식을 하고 집행기관의 직인을 찍어 완전한 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침삭, 수정을 못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 감청의 실시를 하는 때에는 통신기관 직원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입회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청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감청을 종료토록 하고,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의 실시의 종료 후 지체없이 영장 발부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는 판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의 감독 하에 처분을 신청한 기관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감독 하에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처분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청을 지체 없이 종료하도록 하였다.

다. 평가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하여 적절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큰 문제이며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수적이다.

첫째, 국가정보원의 국내수사권을 분리하고 그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권한(법 제5조와 제6조)도 폐지한다.

에 대한 통화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할 때 검사장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회된 통화내역 건수가 1,966건에 달하였다.

둘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법 제7조)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셋째,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하여 무영장주의를 일소한다.

넷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내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통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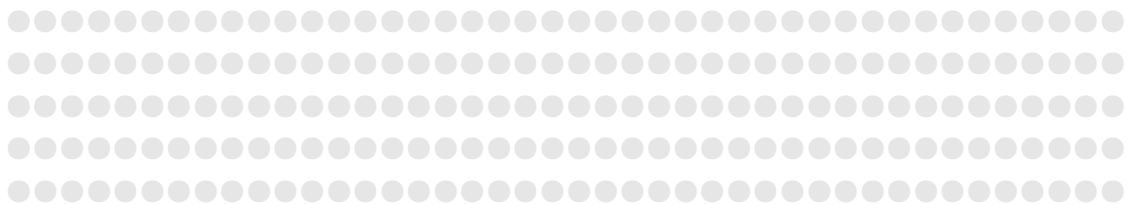
다섯째, 무엇보다 감청 집행 시 법원 등에서 입회를 하여 실제 감청이 발부된 영장대로 집행되도록 감독하고 감청 결과는 봉인 후 법원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당사자 등이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⁴⁹⁾.

여섯째, 패킷 감청 등 인권침해적인 기법의 사용은 국가기관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서 중단되어야 한다.

49) 이와 같은 내용으로 18대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187787)



제3부
정책 제안



1. 통일해외정보원 전환

가. 개요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과제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권교체기에 어김없이 제기되었던 이슈이지만, 정작 근본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정보원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고, 국가정보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다. 냉전이 종속된 이후 경제·환경·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전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보다는 기득권유지(참여정부) 또는 확대(이명박정부)에만 몰두함으로써 한마디로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¹⁾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해외정보원’ 전환논의에 더해,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통일관련 정보를 주관하도록 하되, 반면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수사권을 철저히 근절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을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제언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등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고자 한다.

나.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1) 수사권의 분리는 국가정보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다.

가) 법률적 근거 및 운영실태

1) 명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명칭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국가정보원이나, 안전기획부, 심지어 중앙정보부도 의미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본문에서 살펴볼 국가정보원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정보기관이라는 점, 국내정치 관여가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 통일을 준비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²⁾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균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한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다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된 바 있다.

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보기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침해에 대한 위구심(危懼心)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위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이기도 하다.” (1994년 조규광 재판관등 별개의견)

“안전기획부가 정보수집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옹호보다는 대통령 1인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변정수 재판관 소수의견)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1993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 준수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2) 형법중 내란, 외환죄 / 균형법중 반란, 암호부정사용죄 / 국가보안법규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 보유, 이와는 별도로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 보유

경험 삼아 BND는 수사권은 두지 않고,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

소위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공통점은 수사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분리는 국가정보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보안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공유가 책임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 국가정보원의 입장에 대한 반박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편요구에 대한 입장]⁴⁾이라는 자료를 통해 □ 북한이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제3국 우회침투 등 대남공작활동을 유지, □ 북한 및 해외연계 간첩·공작조직 색출을 위해서는 해외 및 대북·국내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안보수사 전담기관이 필요하며, 장기간 간첩 등 안보사범 수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 및 정예화된 수사인력과 여타 수사기관에 비해 현저한 실적⁵⁾을 올리고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수사권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논거는 여전히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신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은 기득권유지시도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

라) 기타

수사권이 검찰과 경찰로 이관될 경우 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⁶⁾, ② 검찰의 공안부 존폐 문제⁷⁾, ③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④ 공판중심주의⁸⁾, 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문제⁹⁾ 등이

3) 나치의 게슈타포와 옛 동독의 슈타지(공안위원회)처럼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이 하나의 국가기구에 집중될 경우 국민의 자유권은 늘 위협당해왔다.

4) 2005. 8. 25. 발표

5) 90년 이후 전체간첩 123명중 89%인 109명(경찰 12명, 기무사 2명), 00년 이후 검거간첩 16명 중 88%인 14명을 국가정보원이 검거

6) 최근까지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7) 검찰의 공안부를 폐지하고 대공수사를 일반 형사부에서 맡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공안부를 노동부로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관련기사는 각 일간지 2003년 3월 14일자

8) 사법개혁추진위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이 이루어지면,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직접 법정에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정보기관의 속성인 '밀행성'과는 배치되는

관련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가) 법률적 근거 및 운영실태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북,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정보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정부 들어서 자연스럽게 부활되었다.

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의 폐지 또는 축소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국가정보원장 독대 폐지, 대공정책실 재편 등으로 대응했으나,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내보안 정보수집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보안정보와 대북, 국외정보가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 해외, 대북 정보부문과 국내 정보부문의 분리문제

(1) 문제의 소재

대다수의 외국 정보기관이 해외부문과 국내부문에 별도의 정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형과 분리형을 비교해볼 수 있겠다.

결과가 예상된다.

9)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분리되면 그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권한(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동법 제7조)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2) 외국 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정보업무는 CIA,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영국도 해외 정보는 MI6라고도 불리우는 SIS, 국내 방첩은 MI5로도 불리우는 SS로 양분되어 있고, 프랑스는 대외보안총국(DGSE)와 국토감찰국(DST), 독일은 연방정보국(BND)와 헌법수호청(BfV), 이스라엘은 모사드(Mossad)와 신베타(Shin Beth), 일본은 내각조사실과 공안조사청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해외정보업무와 국내 보안 및 방첩의 업무가 통합된 경우는 소련의 KGB, 이란의 SAVAK의 경우들이 있는데, 소련도 해체된 뒤 러시아의 경우에는 해외정보부(SVR)과 연방보안부(FSB)로 업무를 나누고 있는 양상이다.

(3) 찬반 양론의 논거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첫째, 안보의 개념이 단순한 군사적 안보에서 경제안보, 생태안보, 사회안보적 개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힘들다. 둘째, 다수의 정보기관으로 인해 이중의 조직과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셋째, 분리된 조직들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문제가 단점으로 존재하며, 넷째, 다수의 정보기관들간에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다섯째, 한국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북한이라는 존재가 상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외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분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업무의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들은 분리형이 세계적인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첫째, 조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둘째, 조직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셋째, 견제와 균형의 장점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교차적인 중복 점검을 가능케 하며, 넷째, 하나의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독점과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사찰과 공작 정치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이 이러한 업무 영역의 분리 및 국내 보안 업무의 축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게 하고 있다.

(4) 검토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은 해외, 대북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하여 기존의 정보수집활동을 해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과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방안은 새

로운 정보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이 정보업무를 독점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사권 문제 등과 연계하여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방안을 고려할 경우 국가정보원은 그대로 대통령 산하에 두되, 새로 설치되는 국내정보기관은 국무총리산하에 두는 식으로 하여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지적한대로, ① 국내보안정보와 대북, 국외정보가 명백히 구별되지는 않는다는 점, ② 현행법도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이라고 한정열거 하고 있어, 형식상 정보수집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¹⁰⁾, ③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의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보를 '분석'할 권한은 없으므로(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3.다.항 '기획조정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서 다시 언급)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④ 수사권 분리가 전제된다면, ⑤ 정보수집범위의 애매모호함은 국회 또는 민간통제로 규율하거나, ⑥ 국내정치관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엄벌에 처하는 입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보안정보의 분리문제는 어느정도 기술적이거나 부차적이라는 생각이다. 참고로, 현행법과 해외정보처법(노회찬, 2006년), 국가정보원 강화법(이철우, 2008년)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정보수집범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

노회찬 해외정보처 신설방안(2006. 4.)

=> 해외정보처는 국외정보수집·작성 및 배포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철우 국가정보원 강화법(2008. 11.)

=>1.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 나.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 다.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

3)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가) 현황

10) 물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당시에는 그러한 제한 자체가 의미가 없었겠지만, 이를 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는지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다.

나) 기획·조정권한의 폐지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기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법 등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기획·조정권한을 어느 기관이 가질 것인가

(1) 문제의 소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업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기관으로 이양할 것인가 문제된다. 일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고려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기관인 국가안정보장회의가 정보의 조정을 담당하고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배포라는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NSC의 기능과 역할 등과 관련하여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2) NSC의 기능과 역할

참여정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NSC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북, 해외 정보도 일단 NSC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NSC에 정보관리실을 신설하여 각 부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종합판단까지 내린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NSC의 주도적 역할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NSC에 강력한 중앙통제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한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없으며, 결국 국가정보원의 정보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3) 외국의 사례

일본의 경우 총리대신을 지원하는 내각관방(비서실)에는 내각정보관이 지휘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이 있는데, 이 일명 내조실에는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정보집약센터와 내각위성정보센터가 총리를 즉응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또한 경찰청을 지휘하는 국가공안위원회와 방위청을 내각부로 통합 배치하여 종합적인 긴급사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 검토

위기관리 기획 및 정보의 집약, 조정 기능은 국가정보원보다는 최고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강화되어 집중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정보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군을 이전시켜 NSC의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과 위기관리센터를 집중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정보의 기획조정업무는 정보관리실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NSC가 조정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정보수집업무'와 '정보분석업무'의 분리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정보기관에서 진행되는 분석업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의 조직인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에 수렴, 집중시키고 있다. 정보수집업무와 정보분석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CIA, FBI 등 주요 정보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권한을 제한하고, 관세청, 금감원,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정보수집기관을 NSC가 종합적으로 통제 가능해야 한다. 결국 국가정보원 개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NSC는 각 정보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SC의 정보분석 능력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NSC가 대북정책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주도하고, 정책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이 NSC에 담보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제91조)상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 헌법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의 큰 흐름속에 NSC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가)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의회와 정보기관간의 상호 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며, 대신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¹¹⁾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공작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정보위원회(PKK) 소속 의원들은 의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 의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가정보원 예산의 현황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 회계 중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이다. 국가정보원의 예산 구조는 다른 부처에 비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① 공식적인 본예산(주로 경상비) 외에도 ②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부분, ③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가정보원 본예산의 경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안과 관련된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위에는 실질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시 예외 조항을 두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있어 정보위 통제가 무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은 정보위의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결위 통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결산의 경우는 통제가 더욱 허술해서 원장의 책임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만을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완전히 외부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¹²⁾

11) 우리의 경우도 국회법 54조 2에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와 위원 및 소속직원의 비밀누설을 금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국가정보원 예산, 이른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도 문제이다. 국가정보원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길 수 있는 근거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에 존재하는데, 1963. 5. 31. 제정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법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제4조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이 거의 반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지만, 타 부처를 통한 우회적 지출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전체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가 유일한 검증장치인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다) 개선방안

(1)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

국가정보원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기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예비비속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사실상 항목별 세부심사가 불가능하며 결산시에도 총액으로만 결산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예산을 예비비에 은닉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래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정치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과거 권력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우선적으로 예산구

12)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 국회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 그리고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조의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특수한 지출구조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

① 1안 : 현재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예산편성단계)나 감사원(회계검사단계)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한 통제장치이므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 및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보좌기구를 신설한다. 보좌기구는 회계전문가로 구성하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구성함. 보좌기구는 연간 상시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집행을 검사하고 문제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보좌기구를 신설하는 근거를 두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② 2안 : 감사원이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도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하게 하되, 감사원 내에서도 정보접근범위를 제한하고, 그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만 국가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내부직제를 정비하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만 보고하게 하면 될 것이다.

(3)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 삭제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여 정보위가 국가정보원의 예결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4항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민간참여에 의한 국가정보원 통제

(가) 필요성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행 의회에 의

한 통제방법이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전문성 부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민간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나) 방안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된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재의 국회 정보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민간참여를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실정법이나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위반해 벌이는 정보활동 등을 발견,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다) 외국의 사례(정보감독위원회)

대통령 직속,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대외정보자문위원회 (President's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 위원 중 1인을 대통령 임명(이 사람이 위원장)하고, 나머지 2인은 민간인 (citizen outside The government)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Exec Order 12334).

권한으로는 ① 각종 실정법이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위반한다고 믿는 정보활동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Inform)하는 권한 ②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정보활동에 관한 보고를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에게 이첩(forward)하는 권한 ③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의 합법성에 관한 기준에 대한 검토 (review) ④ 위법(unlawful)적이거나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 지시(directive)에 반하는 (contray)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보고하거나 발견하는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의 General Counsel와 내부 감찰(inspectors General) 현황(practices)과 그 절차에 대한 검토 ⑤ 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활동 (investigation)의 수행 등이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직보(report directly)할 수 있으며, DCI(중앙정보장)이나 CIA 혹은 다른 정보공동체의 기관(agency)에 의해 확인해준 (identified) 문제에 관련한 적절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취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정보기관에게 적절한 권고사항을 조언하고 제안할 수 있다.

정보공동체의 부서의 장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동체의 수장과 내부감찰의 장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 그들이 위법하거나 대통령명령 혹은 지시사항에 반하는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일하는 멤버들은 비밀준수의무가 있으며 산하에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국가정보원개혁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상세한 것은 함께 수록된 다른 글들을 참조하시라).

우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첫째,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하여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만족하고 탈권력화를 이루어야 하고,

둘째,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 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며,

넷째,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도록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의 입법조치를 행하고, 아울러 민간참여를 통한 통제를 위해 가칭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을 고려한다.

2. 권한 확대 반대

가. 개요

국가정보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테러방지법 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온 데 이어, 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그 발의에 깊이 개입하고 해당 법안들의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테러 방지, 사이버 안전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에서 기존의 국가기구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응기구와 관련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그 중심적인 대응기구로 국가정보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도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비하여 그 직무가 매우 통합적이고 권한집중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받아 온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크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현황

1)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지난 제16·17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와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훈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이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찰·군·법무부·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 등 국가지조직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18대 국회에 들어선 2008년 10월 28일, 공성진 의원 등 23인은 「국가대테러활동

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의안번호: 1801620)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대테러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의 우선적인 문제는 이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함에 따라 그에 따른 ‘테러단체’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음에도, 소위 ‘테러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테러 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이 정치인 사찰은 물론 정부에 반하는 단체와 조직을 탄압하는 흥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정보와 권력의 집중이다. “국가테러대책회의”(안 제8조 제2항)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 장관들과 함께 “3.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4. 그 밖에 대통령이 지명하는자”가 된다. 이 법안이 종래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의 테러대책회의를 법률로 반영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불과하였던 국가정보원장을 부의장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이 이전보다 커지는 것은 그 뿐이 아니다.

또한 현재 국가정보원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대테러센터”에 대해 이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기획 및 조정(안 제10조 제1항 제3호) 업무를 부과하여 이미 만들어진 군, 경찰 등의 대테러조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안 제15조 제1항)”고 규정하여 각종 국가정보의 과잉생산과 개인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을 허용하였으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요건 또한 그 범위가 불분명한 ‘대테러활동’과 그에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확장하였다(안 부칙 제2조 제3항).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직무라는 이유로 불명확한 기준 하에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임이 자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출동시킨 경우 대책회의 의장과 대테러센터의 장에게 사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안 제21조), 전시가 아님에도 군대가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안 제22조), ‘계엄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실상의 계엄상태’를 만들어 낼수 있다. 계엄보다 낮은 통제요건(계엄: 사전통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요구, 헌법 제77조 제5항)이기는 하지만, 국회의 철수요구(테러방지법: 사전통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철수요구, 제22조 제2항)가 없이 군출동이 당연히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이버 안전

18대 국회 공성진 의원 등 17인은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같은 날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의안번호: 1801619)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국가정보원에 집중시킴으로써 사이버 공간 통제를 위한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과도하게 부여하였다. 특히, 이 법안은 ISP, IDC 및 포털 등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구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바로 며칠 후인 11월 6일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안번호: 1801793)에서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대상에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안전업무를 추가하였다(안 제3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국가정보통신망의 국가는 국가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을 아우른 국가 전체를 의미하므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과 결합하면 모든 정보통신망이 항상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중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현재 사이버 안전을 위한 대응 체계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차원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는 다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222호 2005. 1. 31. 제정)”과 이를 보다 구체화 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매뉴얼”에 의해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위 규정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동 규정 제3조)으로 공공영역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동 규정 제6조)’를 통하면 간접적으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국가정보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 매우 유사하나, 결정적으로 이 법안은 기존의 체계에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현재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넘어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바야흐로 국가정보원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이버 공간을 국가망처럼 통제, 관리감독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제공받거나(안 제8조 제2항) 조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안 제10조 제1항) 경우는 ‘사이버테러’보다 범위가 더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시설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누출·훼손·왜곡전파 하는 모든 공격행위’라

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 바, 해킹 사건 하나가 일어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당장 그에 대한 정보를 방송통신위원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이는 사이버공격에의 대비로서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인터넷을 국가망처럼 통제, 간섭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비밀관리

정부는 2007년 4월 3일과 2008년 9월 2일 17, 18대 국회에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비밀보호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비밀보호법은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포괄적이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의 수집분야에는 처벌 조항이 과다하고 자의적 지정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지 않는 등 비밀의 보호에 치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을 비밀보호 기관으로 명시하여 사실상의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권력남용이 우려된다. 국가정보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그러함에도 국가정보원 권한강화에 따른 감시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비밀관리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현재 국가기밀은 보안업무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보안업무규정으로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고 또, 국가기밀이 대통령령으로 관리되어 국회와 사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시민사회에서도 비밀관리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해온바 있다. 그러나 17대와 18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대통령령이 법률로 바뀌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비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늘려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또,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는 너무나 부족하다. 국가기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기득권을 유지·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안에서 국가정보원에게 비밀분실·누설의 조사권이나 신원조사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정부안은 비밀의 탐지·수집·누설을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다. 수집·누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개념이 모호하고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비밀의 탐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셋째, 비밀의 불법지정에 대한 처벌조항은 만들어야 한다. 넷째, 정부안에서 비밀의 범주에서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무제한 적으로 비밀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비밀등급의 유지·변경 또는 비밀의 해제 등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국회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하고 비밀을 재지정 하거나 파기할때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게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실·누설시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비밀에 대한 범 죄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법률이 시행되면 종전비밀을 재지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여 종전 비밀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 결론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의 예방과 진압개념이 통합되어 있다. 이는 정보기능과 집행기능을 한 기 구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과거 국가정보원이 보안수사권의 행사에서 그러했듯이 정 보기관의 권한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 정보기구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국가정보원에 ‘테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전 대응과 예방적 정보수집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집행의 영역 은 통상적인 국가기구들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기관간의 협조망을 견고하게 갖추는 식 으로 접근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 또한,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테러의 사후진 압)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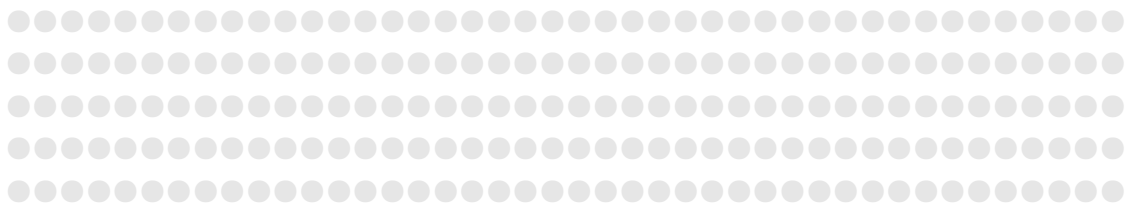
또한 애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1.25 사이버대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의 사이버 위 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대응책으로서 제정한 것이다. 이를 제정할 당시와 현재를 비 교할 때, 사이버 위기의 심각성이 보다 증가되었다거나, 현재의 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이를 강 화해야할 사이버 위기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근본적인 현실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동 법안이 국가정보원의 권력 확대를 꾀하는 여타의 법안들과 비슷한 시기에 함께 상정되었다는 사실 은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자체의 제정에 숨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사이버 공 격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국가가 민간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시스템은 과도한 권력의 통 제이며 공권력의 낭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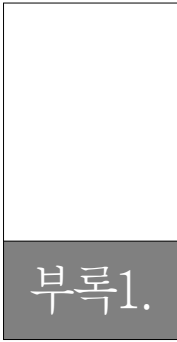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테러 방지 및 사이버 안전에까지 확대하는 법안의 입법은 불필요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비밀을 관리하는 현재의 비밀관리체계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되며,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여 비밀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여 비밀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관리제도를 만 들어야 한다.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이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비밀의 범주와 국가정보원 의 권한만을 확대해서는 안된다.



제4부 부록





부록1.

[보론] 국가정보원 발전위 보고서를 통해 본 국가정보원 수사의 문제점과 권고안

가. 개요

제한된 정보로 인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국가안기획부(이하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정리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원 내부에 설치되었던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발전위)'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토대로 간략하게 중정, 안기부, 국정원이 저지른 과거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고, 국정원 발전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권고안이 현재까지 얼마나 적용되었고 또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논의에 있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혁당 사건과 부일장학회 사건에 대한 국정원 발전위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 국정원 발전위 개요

국정원 발전위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하여 2007년 8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간위원 10명,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과거사건 관계 부서장 5명과 2개의 조사팀(민간, 국정원측 조사관 각 10명, 총 20명) 및 조사지원팀(6명)으로 실무인력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7대 의혹사건과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을 담아 국정원 발전위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발간하였다.

다. 국정원 발전위 7대 의혹사건의 주요 의혹과 조사 결과

국정원 발전위는 다음과 같은 조사대상사건 선정 기준을 통해서 7대 주요 의혹사건을 선정했다. 1. 국민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2. 시민단체 및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 3.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건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7대 의혹사건과 그 의혹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65.5.) : 5.16 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로 탈취, 중정의 주도적 개입 의혹.
2. 인민혁명당(64.8.) 및 민청학련 사건(74.4.) :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 조작 의혹.
3. 동백림 사건(67.7.) : 67년 선거 당시 중정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였다는 의혹.
4. 김대중 납치사건(73.8.) :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라 전 중정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5. 김형욱 실종사건(79.10.) : 김형욱 전 중정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정이 살해했다는 의혹.
6. KAL 858기 폭파사건(87.11.) : 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AL 858기 폭파를 자작했다는 설.
7. 남한조선노동당 사건(92.10.) : 안기부가 92년 대선을 앞두고 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작, 과장했다는 의혹.

이에 대해 국정원 발전위는, KAL 858기 폭파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사건에 대해서 중정과 안기부가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될수록 부족한 증거자료와 관련자들의 협조 거부 및 진술 상충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정원 발전위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라. 국정원 발전위 유형별 6개 분야 실태와 문제점

국정원 발전위는 그간의 부당한 개입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취지로 6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그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분야

내용: 정치인 사찰, 선거개입, 정당 및 국회 활동 개입, 정치자금 통제 등

사례: 야당의원 정치사찰 및 탄압, 총선관세 분석, 후보자 사퇴압력 및 낙선공작, 통치권자의 통치자금 조달 및 관리 등

2. 사법분야

내용: 재판 개입, 법관 인사조치, 변호권 침해 등

사례: 연세대생 내란음모사건,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사건과 검사 파면,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변호사 비리조사 등

3. 언론분야

내용: 필화사건, 언론자유 실천 및 노조 결성 탄압, 보도지침 및 여론조작, 언론인 연행 및 사찰 등

사례: 사상계 필화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 동아·조선투위 탄압, 박정희 정권하 보도지침, 전두환 정권하 보도지침 등

4. 노동분야

내용: 87년 전후 민주노조 탄압,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통제 등

사례: 한국노총 설립과 운영, 도시산업선교회 탄압,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확대, 전교조 및 전노협 조직 와해 활동 등

5. 학원분야

내용: 학교와 교수에 대한 통제,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 등

사례: 학사개입을 통한 통제, 비판성향 교수 인사권 개입, 학원 건전화세력 육성, 운동권 총학생회장 당선 저지, 프락치를 통한 학생운동 조직 와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통제 등

6. 간첩분야

내용: 월북자가족, 남북 귀환어부, 일본취업자, 행방불명자가족 간첩사건 등

사례: 송씨 일가 간첩사건, 정영 간첩사건, 차풍길 간첩사건, 박동운 간첩사건 등

국정원 발전위 보고서에서는 시간과 조사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 종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고는 있다. 하지만 부족한 권한과 인력, 시간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각종 의혹들을 확인하고,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 국정원 발전위의 국정원에 대한 권고와 제언

7대 의혹사건과 6개 분야별 사건 조사를 토대로 국정원 발전위는 국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와 제언을 하였다. 국정원 발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외 공표를 위한 보고서에는 의혹사건의 진상 등과 함께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권고와 국민에 봉사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언 부분은 원문 그대로 옮기도록 한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고

1.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승계한 국가정보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과 사회 제 분야,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하여 행한 일부 월권적 행위에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온 유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했다. 이는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유지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유 업무에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한 측면이 있다. “국정원 발전위”는 조사활동을 통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밝힌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중정과 안기부 시절 야기했던 잘못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2.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만이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관 운영에서는 물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정치 불개입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 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가 최고 권력자의 손발이 되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도 불행해졌을 뿐 아니라, 국가최고정보기관도 본연의 정보활동보다는 정치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정권유지를 위한 첩병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를 개혁하는 일이 중대한 국정과제로 제기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탈정치화를 천명하고, 국가정

보원으로부터 국내정치 관련 정보보고를 받지 않는 등 고강도 개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편으로 과거의 업보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안팎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상충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종종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이 국내정치 문제로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직무범위에 관한 법 규정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와 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국가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역사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를 정부 유관부처와 학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961년 중정 창설 이래 중정-안기부-국정원은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왔으며, 현재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사장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료들은 본 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 유산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중정·안기부는 지난 시기 ‘국가위의 국가’, ‘정부안의 정부’로 치부되었다. 또한 중정·안기부가 특권적으로 행사했던 조정권한은 각 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국정원 존안자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정과 정부 운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위원회의 과거사 진실규명활동은 그 작업의 성격상 중정·안기부의 부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국정원 존안자료를 통해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의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이들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음지에서 일해 온 긍정적인 면들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본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축적된 자료 뿐 아니라, 국정원 존안자료의 공개절차와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일반 공공기관의 30년에 비해 50년 또는 그 이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이미 스스로 고백한 마당에 국가정보원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굳이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 잡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언

4. 국가는 과거의 국가공권력 남용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5. 국가는 과거사의 밝혀진 진실에 기초하여 국가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6.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노력에 대하여 애정 어린 평가를 해주시기를 제안한다.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정보원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안

7. 국가정보원은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시대의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고급 정보들이 생산되고 공개·활용되는 새로운 정보환경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보의 수집과 생산기관인 동시에 주요 정보의 집결지이자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수집·분석·생산한 정보는 일부 특수자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연구소, 대학, 유관 시민단체에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민과 관의 원활하고 긴밀한 정보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정보 서비스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 또한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8. 국가정보원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 정보기관이 고유의 업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활동하던 시절, 수사권의 남용은 국민과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오늘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정원과 그 직원 모두는 과거의 권한 남용이 초래한 이런 불행한 결과를 명심하면서, 과거의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일신해야 하며, 국정원이 전문적인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상응하는 유연한 조직구조와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중정·안기부는 피의자 수사와 더불어 미행과 도청, 우편검열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지난날과 같은 방식의 정보 수집을 용납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이다.

21세기는 교통, 통신,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국경의 담장이 낮아진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은 치열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무엇이 국익인지,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봉사하는 고급정보인지에 대한 기준도 크게 변화하였다.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안기부·국정원은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겪었는데 그 상당부분은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부서의 개편 또는 축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국제환경, 안보여건, 정보개념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선진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이제 남과 북이 적대적인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냉전의 붕괴 이후 더욱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는 동맹과 우방 사이라 하더라도 산업 분야의 경우 첨예한 첩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냉전시대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처럼 간첩의 개념을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해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제공한 자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여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인접·우방국의 산업스파이가 첨단 기술을 빼내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국가이익 분야에 더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와 행동양식, 사고방식에는 아직도 과거 냉전시대, 남북대결 시대의 분위기가 불식되지 않고 남아 있다. 물론 남북 간에 완전한 화해협력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국정원의 변화만을 촉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냉전시대의 잔재를 떨쳐 버리고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 정보환경,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비해 스스로 기구개편·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해야만 한다.

바. 국정원 발전위 조사 성과의 한계와 의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이후로 남한 사회에서는 소위 과거청산 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과거청산기구가 설립되었고,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내부에도 독자적인 과거청산기구가 만들어져 활동을 하였다. 최고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에 설치된 국정원 발전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혹을 확인하고 또 해소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타 과거청산기구들이 부딪혔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과 부족한 권한으로

인해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을 저지르는데 가담했던 이들의 비협조, 더 나아가서는 훼방으로 인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해자인 국가 스스로가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과거청산 작업에 나섰음에도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과 유의미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진실규명의 어려움, 후속조치 이행의 미흡함 등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과거청산 작업을 요청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청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구조변경 등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국정원 발전위의 조사결과와 그에 이은 권고와 제언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의견

중정, 안기부, 국정원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한계가 명확했던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정원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한 행위들은 그 종류가 수가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 불가능할 정도이다.

6대 유형별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정치인 사찰, 선거개입, 정당 및 국회 활동 개입, 법관 인사조치, 변호권 침해, 학교와 교수에 대한 통제 등 거의 모든 부문과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 기능을 분리시키고 정보수집 본연의 임무 영역으로 한정시킬 필요도 있다. 국정원 예산 집행 등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거 잘못된 사건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옹기 국정원에 대한 권고와 국민에 봉사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록2.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통일해외정보원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국가정보원법</u></p> <p>제1조(목적) 이 법은 <u>국가정보원</u>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u>국가안전보장</u>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위) <u>국가정보원</u>(이하 “<u>국정원</u>”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p> <p>제3조(직무) ① <u>국정원</u>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의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u>[<u>대공(對共)</u>, <u>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u>, <u>방첩(防諜)</u>, <u>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u>]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p style="text-align: center;"><u>통일해외정보원법</u></p> <p>제1조(목적) 이 법은 <u>통일해외정보원</u>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위) <u>통일해외정보원</u>(이하 “<u>통해원</u>”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p> <p>제3조(직무) ① <u>통해원</u>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u>[<u>대공(對共)</u>, <u>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u>, <u>방첩(防諜)</u>, <u>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u>] 및 <u>통일해외정보</u>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삭 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 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5조(직원) ①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

4. <삭 제>

5. <삭 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조직) ① 통해원의 조직은 통일해외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통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5조(직원) ① 통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통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통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

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 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8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신 설>

-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 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⑥ 원장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5. 특정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

-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10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受診))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신 설>

제10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 제>

제11조의2(도청의 금지)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이하 “도청”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 ② 국정원은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관(款)·항(項)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제11조의3(신고 등) ① 누구든지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정치관여의 금지, 직권남용의 금지 또는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상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회계) ① 통해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 ② 통해원은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조직의 정원, 소재지 등 조직비밀에 관한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대하여 관(款)·항(項)을 통일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 ③ 통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통해원의 예산 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통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

<신 설>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전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 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

다.

- 제12조의3(예산의 전용 등) ① 원장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이월의 경우에도 같다.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전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 ②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

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및 감사관의 검사를 거친 결산검사보고서 등 결산안 첨부서류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회계보고와 사업보고) ① 원장은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마다 종합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그 밖에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①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모든 정보활동에 대하여 충분히 보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출처, 협조자 및 공작방법 등의 내용이 확인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정보
2. 각 정보기관이 고유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p><u>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또는 추진될 예정인 특정한 공작에 관한 정보</u></p> <p>3. <u>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u></p> <p>② <u>대통령은 모든 불법적인 정보활동과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각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③ <u>국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나 위원들에게 제공된 모든 비밀정보, 정보의 출처 및 획득수단에 관한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u></p> <p>④ <u>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보안누설을 이유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신 설〉</u></p>	<p>제16조(대통령재가문서) ① <u>대통령의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 요구는 재가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u></p> <p>② <u>대통령의 재가문서는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거나 문서화할 시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 결정은 즉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재가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u></p> <p>③ <u>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을 요구한 재가문서 사본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u>대통령 재가문서에 대한 국회제출 방법, 대상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17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16조(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p>	<p><u>〈삭 제〉</u></p>

지명하는 사람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9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도청죄) ①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도청을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사무중 통일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무는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이 법에 의한 통일해외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보며, 그 밖의 국가정보원소속 직원은 통일해외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부록3.

국회법 개정법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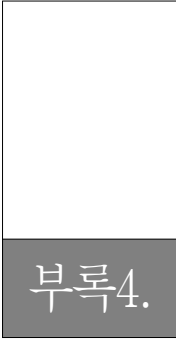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p> <p>< 신 설 ></p>	<p>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법률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② 정보위원회가 소관하는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u>감찰·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보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보 활동과 인사·예산·감사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남용 등 위법사항</u> 2. <u>정보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사업과 보안업무에 관한 감사</u> 3. <u>각급 정보기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u> 	<p>18대 박영선 의원안 (2009. 2. 3, 의안번호 3697) 참조</p> <p>17대 정형근 의원 발의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2006. 3. 23, 의안번호 4093) 참조</p>

<p>< 신 설 ></p>	<p>4. <u>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국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를 의뢰한 구체적인 사항</u></p> <p>③ <u>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보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u></p>	
<p>< 신 설 ></p>	<p>④ <u>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u></p> <p>1. <u>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p> <p>2. <u>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p> <p>3. <u>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p> <p>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정형근 의원안 참조</p>
<p>< 신 설 ></p>	<p>⑤ <u>정보감독위원회는 감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반기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정형근 의원안 참조</p>
<p>② <u>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u></p>	<p>⑥ <u>정보위원회의 위원, 소속공무원</u></p>	

<p><u>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④ 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 ③ 생략</p> <p>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u></p>	<p><u>(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및 정보감독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⑦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⑧ 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상임위원회<삭 제>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 ③ 생략</p> <p>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조직 비밀에 관한 비용 및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u></p>	<p>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일치시킴</p>
--	---	-------------------------

<p><u>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u></p> <p>⑤ ~ ⑧ 생략</p>	<p>⑤ ~ ⑧ 생략</p>	
---	-----------------	--



부록4.

독일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연방정보기관통제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Kontrollgremiumgesetz - PKGrG)¹⁾

Kontrollgremiumgesetz vom 29. Juli 2009 (BGBl. I S. 2346)
2009년 7월 29일 통제위원회법률(BGBl. I S. 2346)

§ 1 Kontrollrahmen

제1조 통제범위

(1) Die Bundesregierung unterliegt hinsichtlich der Tätigkeit des Bu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 des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es und des Bundesnachrichtendienstes der Kontrolle durch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 번역(가나다순):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은희 (독일 Niederrhein Hochschule 석사), 홍선기 (독일 Freiburg 대학 박사과정, 헌법 전공)

1) 동 법률은 모든 주에 소속된 정보기관이 아닌 연방차원의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로 독일 기본법(헌법) 제45d조를 근거로 해서 제정되었다(Artikel 45d GG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1) Der Bundestag bestellt ein Gremium zur Kontrolle der nachrichtendienstlichen Tätigkeit des Bundes. (2)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 기본법 제45조 (1) 연방의회는 연방정보기관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더 자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1) 연방정부는 연방헌법보호청(Bu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²⁾ 군첩보기관(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및 연방정보기관(Bundesnachrichtendienst)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회통제위원회(Kontrollgremium)의 통제에 따른다.

(2) Die Rechte des Deutschen Bundestages, seiner Ausschüsse und der Kommission nach dem Artikel 10-Gesetz bleiben unberührt.

(2) 연방의회·상임위원회(Ausschüsse) 및 특별위원회(Kommission)의 권리는 독일 기본법 제10조 “통신비밀자유제한에관한법률”(Artikel 10-Gesetz: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³⁾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2 Mitgliedschaft

제2조 구성

(1) Der Deutsche Bundestag wählt zu Beginn jeder Wahlperiode die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aus seiner Mitte.

(1) 연방의회는 매 해당 의회임기 초에 연방의원 중에서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2) Er bestimmt die Zahl der Mitglieder, die Zusammensetzung und die Arbeitsweise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2) 연방의회는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의 수, 업무 조직 및 업무 방식을 결정한다.

(3) Gewählt ist, wer die Stimmen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auf sich vereint.

(3) 위원회의 위원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다른 의견: 연방의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가 선출된다).⁴⁾

2) 헌법보호청의 경우 독일 내의 각주도 역시 고유의 헌법보호청(La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을 보유하고 있다. 동 법은 연방소속 기관이 통제대상이다.

3) http://de.wikipedia.org/wiki/Artikel_10-Gesetz;
<http://www.bundestag.de/bundestag/gremien/pkgr/einfuehrung.html> 참조.

4) 위 문장에서 독일 연방의회 구성원 다수의 목소리라는 의미가 여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의장이나 그 대행자의 선출과도 관련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일반 구성원 선출

(4) Scheidet ein Mitglied aus dem Deutschen Bundestag oder seiner Fraktion aus oder wird es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oder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so verliert es seine Mitgliedschaft i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 3 Absatz 3 bleibt unberührt. Für dieses Mitglied ist unverzüglich ein neues Mitglied zu wählen; das Gleiche gilt, wenn ein Mitglied aus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ausscheidet.

(4) 연방의회 의원 또는 (교섭단체)정당의 당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연방정부 또는 의회 사무처장⁵⁾의 된 위원은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조 제3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위원의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이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 3 Zusammentritt

제3조 회의

(1)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tritt mindestens einmal im Vierteljahr zusammen. Es gibt sich eine Geschäftsordnung.

(1) 의회통제위원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1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것은 국회법⁶⁾으로 정한다.

과 관련된 조항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의장선출 조항은 의장(Präsident)을 표현하는 문구가 나온다.

5)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7월 내각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는 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두었는데 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가하여 정무를 처리하되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게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유엔 사무총장을 표현할 때 UN-Sekretär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실질적인 주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판단되어 사무총장이나 서기장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2434&mobile&categoryId=1595>): http://de.wikipedia.org/wiki/Staatssekret%C3%A4r#Parlamentarische_Staatssekret.C3.A4re 참조.

6) 일반적으로 ‘의사규칙’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개념인 ‘Geschäftsordnung’이 국회법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 위원회 자체적인 의사규칙’을 의미하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다. 검색이 안 된다.

(2) Jedes Mitglied kann die Einberufung und die Unterrichtung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verlangen.

(2) 모든 위원은 의회통제위원회의 소집과 의회통제위원회에서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übt seine Tätigkeit auch über das Ende einer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hinaus so lange aus, bis der nachfolgende Deutsche Bundestag gemäß § 2 entschieden hat.

(3) 제2조에 따라서 차기 연방의회가 의회통제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때까지 의회통제위원회는 해당 연방의회의 임기 종료 후에도 업무를 수행한다.

§ 4 Pflicht der Bundesregierung zur Unterrichtung

제4조 연방정부의 보고의무

(1) Die Bundesregierung unterrichtet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umfassend über die allgemeine Tätigkeit der in § 1 Absatz 1 genannten Behörden und über Vorgänge von besonderer Bedeutung. Auf Verlange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hat die Bundesregierung auch über sonstige Vorgänge zu berichten.

(1) 연방정부는 의회통제위원회에 제1조 제1항에 명기된 관청의 일반적 직무활동 및 특별히 중요한 사안의 처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고한다. 의회통제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방정부는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한다.

(2) Die politische Verantwortung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in § 1 genannten Behörden bleibt unberührt.

(2) 제1조에 명기된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 5 Befugnisse des Kontrollgremiums, Amtshilfe

제5조 통제위원회의 권한, 직무상의 협조

(1) Soweit sein Recht auf Kontrolle reicht, kann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von der Bundesregierung und den in § 1 genannten Behörden verlangen, Akten oder andere in amtlicher Verwahrung befindliche Schriftstücke,

gegebenenfalls auch im Original, herauszugeben und in Dateien gespeicherte Daten zu übermitteln sowie Zutritt zu sämtlichen Dienststellen der in § 1 genannten Behörden zu erhalten.

(1) 의회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제1조에 명기된 기관의 통제에 관한 권한 범위 내라면 서류 또는 공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를 존재하는 경우 요구할 수 있다. 원본제출 또는 저장정보의 전송 그리고 제1조에 언급된 해당 관청의 모든 근무처에 대한 출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Es kann Angehörige der Nachrichtendienste, Mitarbeiter und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sowie Beschäftigte anderer Bundesbehörden nach Unterrichtung der Bundesregierung befragen oder von ihnen schriftliche Auskünfte einholen. Die anzuhörenden Personen sind verpflichtet, vollständige und wahrheitsgemäße Angaben zu machen.

(2) 의회통제위원회는 (제1조 제1항 해당)정보기관의 기관원, 연방정부 공무원 및 구성원, 다른 연방기관의 직원에게 연방정부의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작성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청문대상자는 완전하고 진실하게 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Den Verlange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hat die Bundesregierung unverzüglich zu entsprechen.

(3) 연방정부는 의회통제위원회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4) Gerichte und Behörden sind zur Rechts- und Amtshilfe, insbesondere zur Vorlage von Akten und Übermittlung von Dateien, verpflichtet. Soweit personenbezogene Daten betroffen sind, dürfen diese nur für Zwecke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übermittelt und genutzt werden.

(4) 법원과 관청은 사법공조(법적인 협조) 및 직무상의 협조의무, 특히 문서제출과 정보전송에 대한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일 경우 그런 정보는 단지 의회통제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해서만 전송되고 이용될 수 있다.

§ 6 Umfang der Unterrichtungspflicht, Verweigerung der Unterrichtung

제6조 보고의무 범위, 보고거부

(1) Die Verpflichtung der Bundesregierung nach den §§ 4 und 5 erstreckt sich nur auf Informationen und Gegenstände, die der Verfügungsberechtigung der Nachrichtendienste des Bundes unterliegen.

(1)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정보기관의 처분권에 해당되는 정보와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Soweit dies aus zwingenden Gründen des Nachrichtenzugangs oder aus Gründen des Schutzes von Persönlichkeitsrechten Dritter notwendig ist oder wenn der Kernbereich der exekutiven Eigenverantwortung betroffen ist, kann die Bundesregierung sowohl die Unterrichtung nach § 4 als auch die Erfüllung von Verlangen nach § 5 Absatz 1 verweigern sowie den in § 5 Absatz 2 genannten Personen untersagen, Auskunft zu erteilen. Macht die Bundesregierung von diesen Rechten Gebrauch, so hat das für den betroffenen Nachrichtendienst zuständige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 2 Absatz 1 Satz 2 des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es, § 1 Absatz 1 Satz 1 des MAD-Gesetzes, § 1 Absatz 1 Satz 1 des BND-Gesetzes) dies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zu begründen.

(2) 이 정보와 대상이 정보접근과 관련한 부득이한 이유나 혹은 제3자의 인격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또는 행정 고유책임의 핵심영역과 관련되는 한, 연방정부는 동법 제4조에 따른 보고와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요구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제5조 제2항에서 언급된 당사자에게 정보제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연방정부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관련 정보기관에 대한 관찰 있는 연방정부의 구성원(연방헌법보호청법 제2조 제1항 제2문: § 2 Absatz 1 Satz 2 des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es, 군첩보기관법 제1조 제1항 제1문: § 1 Absatz 1 Satz 1 des MAD-Gesetzes, 연방정보기관법 제1조 제1항 제1문: § 1 Absatz 1 Satz 1 des BND-Gesetzes)은 의회통제위원회에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7 Beauftragung eines Sachverständigen

제7조 전문가 위임

(1)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kann mit der Mehrheit von zwei Dritteln seiner Mitglieder nach Anhörung der Bundesregierung im Einzelfall einen Sachverständigen beauftragen, zur Wahrnehmung seiner Kontrollaufgaben

Untersuchungen durchzuführen. Der Sachverständige hat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über das Ergebnis seiner Untersuchungen zu berichten; die §§ 5, 6 und 10 Absatz 1 gelten entsprechend.

(1) 의회통제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청문(보고청취) 후에 통제업무의 수행을 위한 개별적 사례에 대한 조사수행을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가는 자신의 조사에 대한 결과를 의회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10조 제1항 또한 동일하게 준용된다.

(2)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kann mit Mehrheit von zwei Dritteln seiner Mitglieder entscheiden, dass dem Deutschen Bundestag ein schriftlicher Bericht zu den Untersuchungen erstattet wird. Der Bericht hat den Gang des Verfahrens, die ermittelten Tatsachen und das Ergebnis der Untersuchungen wiederzugeben. § 10 gilt entsprechend.

(2) 의회통제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연방의회에 조사를 위한 서면보고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서면보고에는 절차의 진행, 조사된 사실관계 및 조사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는 준용된다.

(3) Der Bericht darf auch personenbezogene Daten enthalten, soweit dies für eine nachvollziehbare Darstellung der Untersuchung und des Ergebnisses erforderlich ist und die Betroffenen entweder in die Veröffentlichung eingewilligt haben oder das öffentliche Interesse an der Bekanntgabe gegenüber den Belangen der Betroffenen überwiegt.

(3) 개인정보가 조사 및 그 결과의 실질적인 설명을 위하여 필수적이면서 당사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이익에 비해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우월한 경우에는 보고서에 그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8 Eingaben

제8조 진정

(1) Angehörigen der Nachrichtendienste ist es gestattet, sich in dienstlichen Angelegenheiten, jedoch nicht im eigenen oder Interesse anderer Angehöriger dieser Behörden, ohne Einhaltung des Dienstweges unmittelbar an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zu wenden. Eingaben sind zugleich an die Leitung des betroffenen Dienstes zu richten.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übermittelt die Eingaben der Bundesregierung zur Stellungnahme.

(1) 정보기관의 구성원에게는 본인 혹은 이 기관의 다른 구성원의 이해와 관련이 없는 사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의회통제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진정은 동시에 관련 직무분야의 책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의회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의)입장표명을 (듣기)위해 이 진정을 연방정부에 전달한다.⁷⁾

(2) An den Deutschen Bundestag gerichtete Eingaben von Bürgern über ein sie betreffendes Verhalten der in § 1 Absatz 1 genannten Behörden können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zur Kenntnis gegeben werden.

(2) 동 법 제1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청의 행위와 관련된 시민으로부터 제기된 연방의회에 대한 진정은 의회통제위원회에 통지될 수 있다.

§ 9 Mitberatung

제9조 (공동)심의

(1) Der Vorsitzende, sein Stellvertreter und ein beauftragtes Mitglied können an den Sitzungen des Vertrauensgremiums nach § 10a der Bundeshaushaltsordnung mitberatend teilnehmen. In gleicher Weise haben der Vorsitzende des Vertrauensgremiums nach § 10a der Bundeshaushaltsordnung, sein Stellvertreter und ein beauftragtes Mitglied die Möglichkeit, mitberatend an den Sitzunge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teilzunehmen.

(1) 위원장, 그 대행자 및 위임된 위원은 연방예산법 10a에 따라 신뢰위원회⁸⁾ 회의에 공동

7) 이 조항의 취지는 정보요원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감독위원회와 접촉을 하게 하면 사실상 조직 내부에서 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조항을 통해 정보요원들이 쉽게 감독위원회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된다. 즉 뭔가 부조리한 사항을 정보요원이 통제기관인 통제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통제위원회는 다시 이 내용을 관련된 정보기관 부서의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연방정부에 그 진정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정보기관 활동을 통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즉, 정보기관 내에서의 내부자 고발의 활성화 취지로 보인다.

8) 국내의 소요 예산 동의를 위한 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중 비밀정보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비공개원칙이다.

심의를 위해 참석할 수 있다. 동일하게 신뢰위원회 위원장, 그 대행자 및 선임된 위원은 연방예산법 10a에 따라 의회통제위원회 회의에 공동심의를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Die Entwürfe der jährlichen Wirtschaftspläne der Dienste werden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zur Mitberatung überwiesen. Die Bundesregierung unterrichtet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über den Vollzug der Wirtschaftspläne im Haushaltsjahr. Bei den Beratungen der Wirtschaftspläne der Dienste und deren Vollzug können die Mitglieder wechselseitig mitberatend an den Sitzungen beider Gremien teilnehmen.

(2) 정보기관의 매해 관련된 일반(보완)예산안⁹⁾은 공동심의를 위하여 의회통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정부는 회계연도 내에 그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 의회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기관의 해당 예산안 심의와 그 집행에 있어서 위원은 공동심의를 위하여 양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10 Geheime Beratungen, Bewertungen, Sondervoten

제10조 비공개 심의, 평가, 특별 의사표시(소수 의견)

(1) Die Beratunge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sind geheim. Die

9) 'Wirtschaftspläne'의 개념은 여기서는 정보기관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일반예산(Haushaltsplan)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이나 가예산이나 준예산은 아니다. 아래의 문장을 번역해 보면 동 의미는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살림살이가 합목적적이지 않을 경우, 연방이나 주의 운영으로부터 수립되는 보완예산" 라고 되어 있다. "Der Haushaltsplan (Etat oder Budget) ist die durch das Haushaltsgesetz festgestellt. Die Haushalts- und Wirtschaftsplanung des Bundes oder Landes maßgebende Zusammenstellung aller Veranschlagten Einnahmen und Ausgaben, Verpflichtungsermächtigungen, Stellenplan von allen Bundes- oder Landesverwaltungen für ein oder zwei Rechnungsjahre (Art. 110 GG). Der Wirtschaftsplan ist ein Ersatzhaushaltsplan, der von Betrieben des Bundes oder des Landes aufgestellt wird, wenn ein Wirtschaften nach Einnahmen und Ausgaben des Haushaltsplans nicht zweckmäßig ist(<http://verwaltungsfachwirt.jimdo.com/f%C3%A4cher/finanzwesen/ziel-u-notwendigkeit-der-haushalts-und-wirtschaftsplanung/>). Wirtschaftspläne sind für Landesbetriebe und Regiebetriebe die Bewirtschaftungsgrundlage, wenn diese nicht nach den Einnahmen und Ausgaben eines Haushaltsplans (Kameralistik) wirtschaften(<http://de.wikipedia.org/wiki/Wirtschaftsplan>)."

Mitglieder des Gremiums und die an den Sitzungen teilnehmenden Mitglieder des Vertrauensgremiums nach § 10a der Bundeshaushaltsordnung sind zur Geheimhaltung der Angelegenheiten verpflichtet, die ihnen bei ihrer Tätigkeit i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bekannt geworden sind. Dies gilt auch für die Zeit nach ihrem Ausscheiden aus beiden Gremien. Das Gleiche gilt für Angelegenheiten, die den Mitglieder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anlässlich der Teilnahme an Sitzungen des Vertrauensgremiums nach § 10a der Bundeshaushaltsordnung bekannt geworden sind.

(1) 의회통제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 및 연방예산법 제10조의a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신뢰위원회의 위원들은 의회통제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 비밀준수의무는 양 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상실된 후에도 동일하다.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이 연방예산법 제10조의a에 따라 신뢰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2) Absatz 1 gilt nicht für Bewertungen bestimmter Vorgänge, wenn eine Mehrheit von zwei Dritteln der anwesenden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ihre vorherige Zustimmung erteilt hat. In diesem Fall ist es jedem einzelnen Mitglied des Gremiums erlaubt, eine abweichende Bewertung (Sondervotum) zu veröffentlichen.

(2) 제1항은 의회통제위원회의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전에 합의된 특정 사건의 평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모든 개별 위원들은 상이한 평가(소수 의견)를 공표할 수 있다.

(3) Soweit für die Bewertung des Gremiums oder die Abgabe von Sondervoten eine Sachverhaltsdarstellung erforderlich ist, sind die Belange des Geheimschutzes zu beachten.

(3) 위원회의 평가 또는 소수 의견의 공개를 위해 사실관계의 설명이 필수적이라도 비밀보호에 대한 이익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 11 Unterstützung der Mitglieder durch eigene Mitarbeiter

제11조 동료를 통한 위원 지원

(1) Die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haben das Recht, zur Unterstützung ihrer Arbeit Mitarbeiter ihrer Fraktion nach Anhörung der Bundesregierung mit Zustimmung des Kontrollgremiums zu benennen. Voraussetzung für diese Tätigkeit ist die Ermächtigung zum Umgang mit Verschlussachen und die förmliche Verpflichtung zur Geheimhaltung.

(1)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직무지원을 위해 해당 위원회의 동의로 연방정부에 대한 청문 후 자당 소속 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전제는 비밀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위임 및 비밀유지의 공식적인 서약(맹세)이다.

(2) Die benannte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sind befugt, die vom Gremium beigezogenen Akten und Dateien einzusehen und die Beratungsgegenstände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mit den Mitgliedern des Gremiums zu erörtern. Sie haben grundsätzlich keinen Zutritt zu den Sitzungen des Kontrollgremiums. Das Gremium kann im Einzelfall mit Mehrheit von zwei Dritteln seiner Mitglieder beschließen, dass Mitarbeiter der Fraktionen an bestimmten Sitzungen teilnehmen können. § 10 Absatz 1 gilt entsprechend.

(2) 지명된 동료는 위원회에 원용된 서류와 정보들에 대한 열람 및 의회통제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해당 위원과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회는 개별적인 경우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자당 의원을 특정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은 준용된다.

§ 12 Personal- und Sachausstattung des Kontrollgremiums

제12조 의회통제위원회에 대한 인적 및 물적 설비 지원

(1)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werden zur Unterstützung im erforderlichen Umfang Beschäftigte der Bundestagsverwaltung beigegeben. Die dafür zur Verfügung zu stellende Personal- und Sachausstattung ist im Einzelplan des Deutschen Bundestages gesondert auszuweisen. Für die Beschäftigten gelten § 10 Absatz 1 und § 11 Absatz 1 Satz 2 entsprechend.

(1) 지원을 위하여 의회통제위원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연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지원을 받는다. 이를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는 연방의회의 개별적인 예산항목¹⁰⁾으로 별도

로 편성된다. 그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제2문이 준용된다.

(2) Die Aufträge für die Beschäftigten werden im Einzelfall durch Weisungen des Gremiums - in organisatorischen Fragen und in Eilfällen auch des Vorsitzenden - erteilt.

(2) 그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지시는 개별적인 사안의 경우 의회통제위원회가, 조직과 관련된 문제 및 긴급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한다.

(3) Nach Maßgabe dieser Weisungen ist den Beschäftigten im Rahmen der Informationsrechte des Gremiums nach § 5 Auskunft zu ihren Fragen zu erteilen sowie Einsicht in die erforderlichen Akten und Dateien zu gewähren. § 6 Absatz 2 gilt entsprechend.

(3)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그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보청구권의 범위에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필요한 서류 및 정보의 열람이 허용된다. 제6조 제2항이 준용된다.

§ 13 Berichterstattung

제13조 보고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erstattet dem Deutschen Bundestag Bericht über seine bisherige Kontrolltätigkeit, mindestens in der Mitte und am Ende jeder Wahlperiode. Dabei nimmt es auch dazu Stellung, ob die Bundesregierung gegenüber dem Gremium ihren Pflichten, insbesondere ihrer Unterrichtungspflicht zu Vorgängen von besonderer Bedeutung, nachgekommen ist.

의회통제위원회는 최소한 매 의회임기 중간 및 종료 시에 연방의회에 이전의 통제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가 위원회에 대하여 그들의 의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 14 Gerichtliche Zuständigkeit

10) <http://de.wikipedia.org/wiki/Einzelplan>

제14조 (권한)쟁의 시 관할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et über Streitigkeiten zwischen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und der Bundesregierung auf Antrag der Bundesregierung oder von mindestens zwei Dritteln der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 또는 최소한 의회통제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 신청으로 제기된 의회통제위원회와 연방정부 간의 분쟁에 관하여 결정한다.¹¹⁾

11) 독일의 기본법 및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정부와 각종 위원회 사이의 권한쟁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다(Parteifähigkeit : Antragsberechtigt sind Oberste Bundesorgane im Sinne des Art. 93 Abs. 1 Nr. 1 GG. Dazu zählen der Bundespräsident, der Bundestag, Bundesrat und die Bundesregierung, sowie die gemeinsamen Ausschüsse (Art. 93 Abs. 1 Nr. 1 GG i.V.m. § 13 Nr. 5, § 63 BVerfGG).